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인도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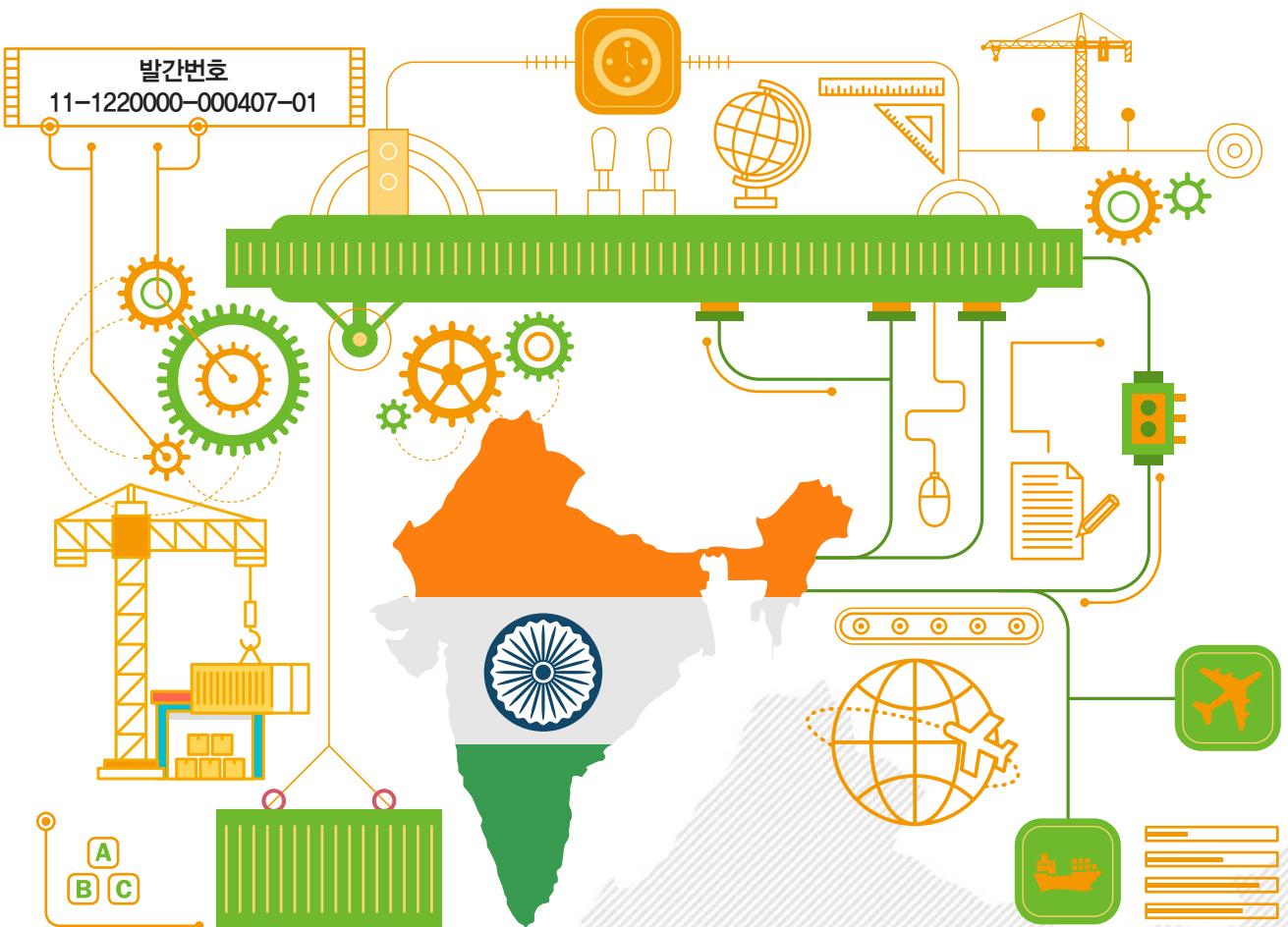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인도 India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ntro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여건 하에서도 한국의 2018년 수출액은 6천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력시장인 對중국 · 미국으로의 수출과 신(新)남방지역인 인도 · 아세안 ·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이 함께 역대 최대 무역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실현한 결과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수준을 높여 공조와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 영역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 외교 · 경제정책입니다.

이에 본 E-book은 2018년 既발행된 베트남을 제외한 신(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인도를 대상으로 한-인도 CEPA의 활용 및 해당국의 최신 통관통상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작성 시점에서 최신 버전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록 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가운데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E-book을 인도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출처원문이나 관련법령,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 및 인도 현지의 최신 통관통상 환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제 I 절 | 도 입



인도 개황	08
인도 주요 경제지표	09
인도 FTA 체결현황	09
인도 통관 · 통상환경	11
한-인도 CEPA 개관	12

제 II 절 | 한-인도 CEPA 활용방안



1. 한-인도 CEPA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16
2. 한-인도 CEPA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29
3. 류별 활용기능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35
4.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51





제Ⅲ절 | 인도의 통관 절차

1. 통관 조직 및 절차	68
2. 한-인도 CEPA 특혜적용 절차	82
3. 인도의 주요 인증 제도	106



제Ⅳ절 | 인도 통상정책

1. 최근 인도의 통상정책 동향	126
2. 인도의 무역구제조치	138
3. 한-인도 CEPA에서의 무역구제	149



제Ⅴ절 | 우리기업의 한-인도 CPEA관련 수출애로사항

1.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156
2. 서명권자 불일치 등	158
3.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애로 사항 사례	162
4.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상 개정된 HS 요구	164
5.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C/O 불인정 사례	166



인도편 India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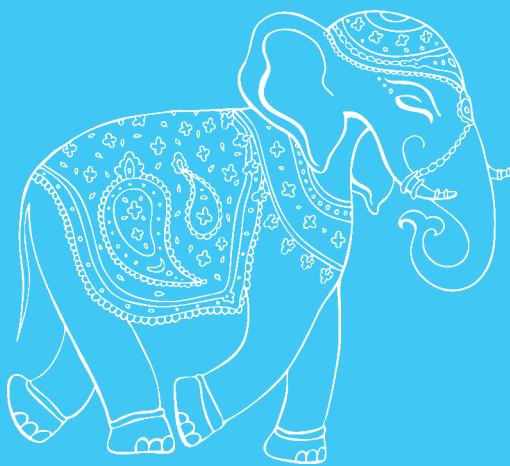
인도 개황

인도 주요 경제지표

인도 FTA 체결현황

인도 통관 · 통상환경

한-인도 CEPA 개관



인도 개황



국가명	인도(Republic of India)
수도	뉴델리(New Delhi)
인구	13억 1,689만명('18(E), IMF)
행정구역	29개 주와 수도(States and Capitals), 7개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ies)
주요 도시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벵갈루루
민족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기타
언어	표준어(힌두어)를 포함한 22개 언어
종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기타
독립일	1947년 8월 15일
GDP 성장률(%)	7.3%('18, IMF)

자료 : knowindia 홈페이지, IMF



인도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2018	2019	2020	2021
GDP(십억 달러)	2,972	3,257	3,577	3,924
GDP 성장률(%)	7.257	7.489	7.74	7.731
1인당 GDP(달러)	2,198	2,378	2,578	2,791
소비자물가 상승률(%)	3.882	4.245	4.232	4.178
상품 및 서비스수출*(%)	8	8	8.133	8.5
상품 및 서비스 수입*(%)	9.949	8.728	8.73	8.63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전망치)

인도 FTA 체결현황



체결 및 발효	아세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GSTP,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메르코수르(MERCOSUR), 칠레, 아프가니스탄, 부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한국
협상 중	BIMSTEC,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EU, EFTA

자료 : WTO, RTA Database (검색일자: '19.06.26.)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SAFTA :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2006년 1월 발효된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협정으로 남아시아지역협력협의체(SAARC)의 회원국이 빈곤해소와 경제협력확대 등을 위해 결성한 협력체임. 회원국은 인도, 파akistan, 네팔, 몰디브, 부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7개국임



메르코수르 (MERCOSUR : Mercado Común del Sur)

남아메리카 국가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등)의 경제공동체로 역내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수립. 대외공통관세 체계 성립, 공동 목적의 무역정책을 채택 및 국제적·지역적 측면에서 협조 등을 목적으로 함



자료 : MERCOSUR 홈페이지(<https://www.mercosur.int/>)



자료 : BIMSTEC 홈페이지(<https://bimstec.org/>)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간 체결된 관세동맹체로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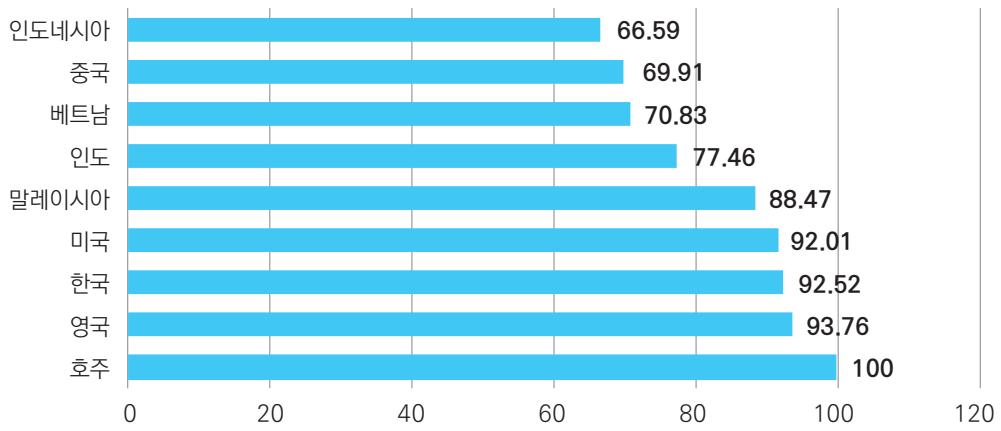


자료 : SACU 홈페이지(<https://www.sacu.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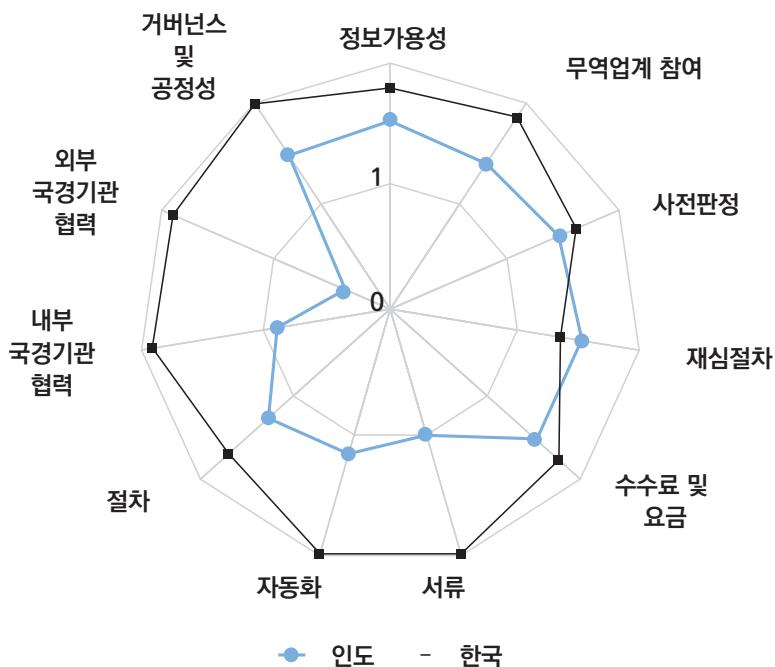
인도 통관 · 통상환경



국경 간 무역 용이성 수준



무역원활화 수준(2017년)



* Trading Across Borders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OECD Trade Facilitation ('19년 3월 기준)

한-인도 CEPA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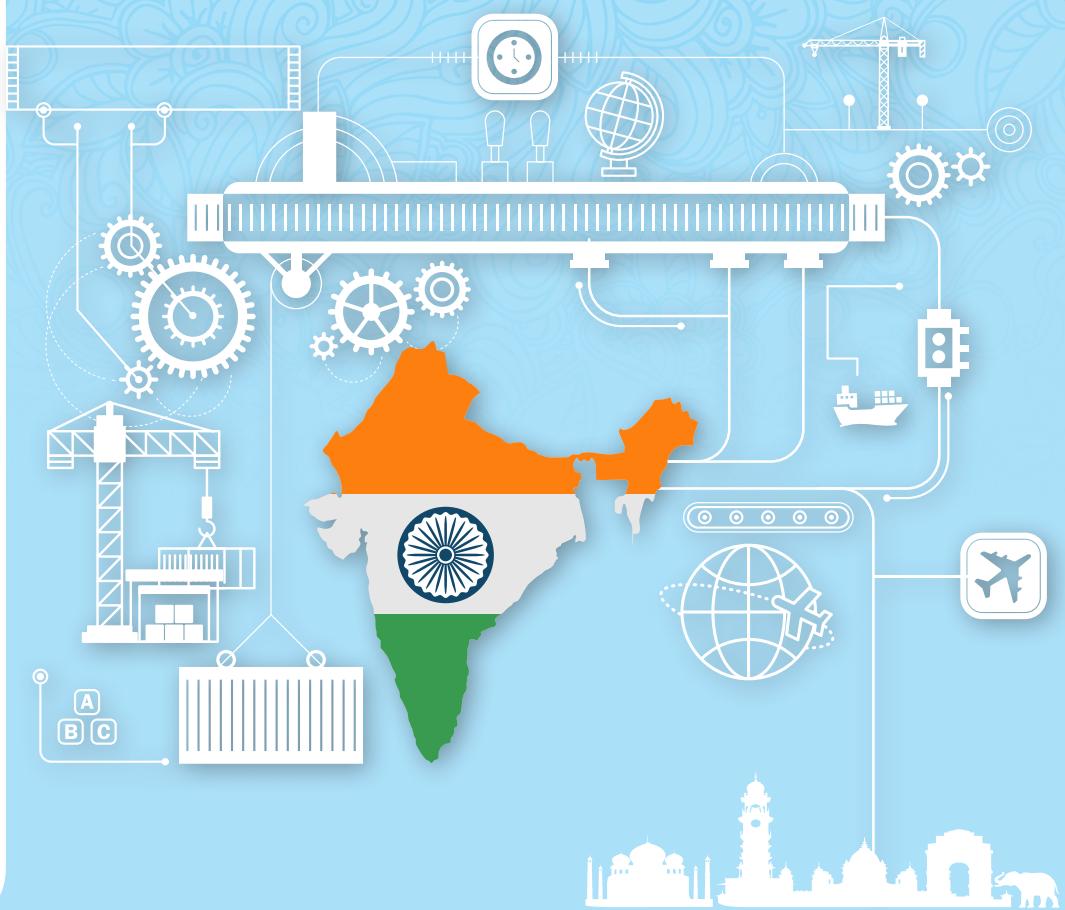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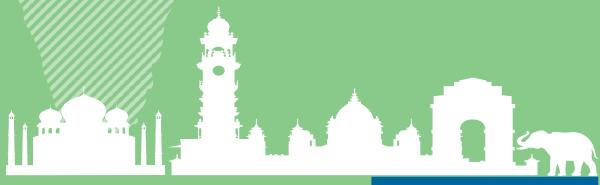
- 한국과 인도는 2006년 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년 7개월간, 공식협상 12회, 기간협상 2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 2008년 9월 25일 사실상 타결
- 양국정부간서명('09.8.7) 함께 따라 2010년 1월 1일 발효

CEPA와 FTA의 관계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와 명칭은 상이하지만 양 체약당사국 간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님

일 시	내 용
2003.12.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치문제 검토 합의
2004.10.	CEPA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적 유대관계 관련 합의사항 발표
2006.02.07.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08.09.22.~25.	실질적 타결
2009.07.02.	한-인도 CEPA 인도 내각 승인
2009.08.07.	공식 서명
2009.11.06.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01.01.	한-인도 CEPA 발효
2017.09.21.~22.	한-인도 CEPA 제3차 개선협상 개최(서울)
2018.12.11.~12.	한-인도 CEPA 제7차 개선협상 개최(서울)





인도편 India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I

한-인도 CEPA 활용방안

1. 한-인도 CEPA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2. 한-인도 CEPA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3. 류별 활용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4.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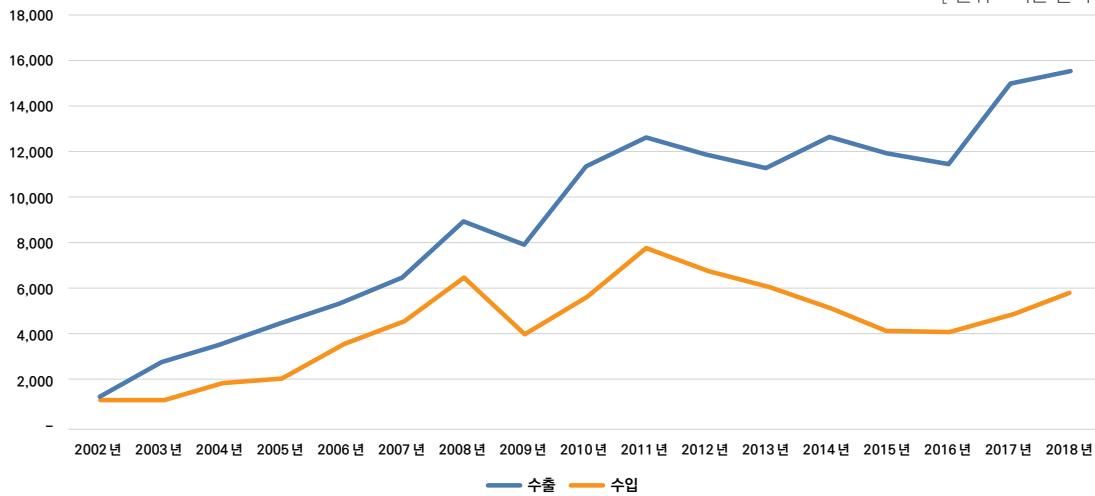
01

한-인도 CEPA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우리나라 對인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K-stat

-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금액은 2002년 14억 달러에서 CEPA 발효연도인 2010년에 11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56억 달러를 기록
- 對인도 수입금액은 2002년 12억 달러에서 2011년 7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연도	수출	수입
2002년	1,384	1,249	2011년	12,654	7,894
2003년	2,853	1,233	2012년	11,922	6,921
2004년	3,632	1,850	2013년	11,376	6,180
2005년	4,598	2,112	2014년	12,782	5,275
2006년	5,533	3,641	2015년	12,030	4,241
2007년	6,600	4,624	2016년	11,596	4,189
2008년	8,977	6,581	2017년	15,056	4,948
2009년	8,013	4,142	2018년	15,606	5,885
2010년	11,435	5,674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K-stat

우리나라 對인도 품목별 교역 동향



- (수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상위 품목은 전기제품, 철강, 기계류, 플라스틱 및 유기화학품 등으로 나타남
- 그 중 기계류, 광·정밀기기의 경우 각각 46.8%, 32.6%로 2017년 동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요 수출 품목 중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85류에 해당하는 전기제품의 경우 2017년 동기간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류 표제)	수출금액		증감률
		2017	2018	
85	전기제품	3,090	2,572	-16.7
72	철강	2,023	2,505	23.8
84	기계류	1,661	2,438	46.8
39	플라스틱	1,396	1,740	24.7
29	유기화학품	933	1,055	13.1
27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	650	814	25.3
87	승용자동차 등	750	776	3.6
90	광·정밀기기	379	502	32.6
79	아연	375	405	8.0
40	고무	317	333	4.9

주 :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K-stat

우리나라 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2018)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입)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입 상위 품목은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 알루미늄, 유기화학품, 철강 및 면 등으로 나타남
 - 수입 상위 품목 중 제84류에 해당하는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수입 금액이 2017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임
 - 그 중 주요 수입물품인 알루미늄의 경우 2017년 동기간 대비 6.5%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2014~2018)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알루미늄(제76류) : '14년 : 354(백만 달러), '15년 : 498(백만 달러), '16년: 505(백만 달러), '17년: 849(백만 달러), '18년: 904(백만 달러)

우리나라의 對인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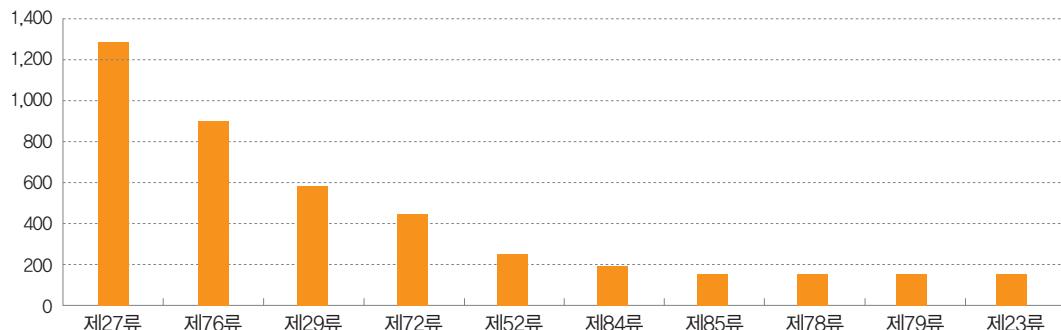
HS	품목명 (류 표제)	수입금액		증감률
		2017	2018	
27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	1,048	1,282	22.3
76	알루미늄	849	904	6.5
29	유기화학품	460	594	29.0
72	철강	366	447	22.0
52	면	187	269	44.1
84	기계류	204	196	-4.2
85	전기제품	135	169	25.3
78	납	75	166	120.9
79	아연	145	166	14.6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	110	164	49.9

주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K-stat

우리나라 對인도 주요 수입 품목(2018)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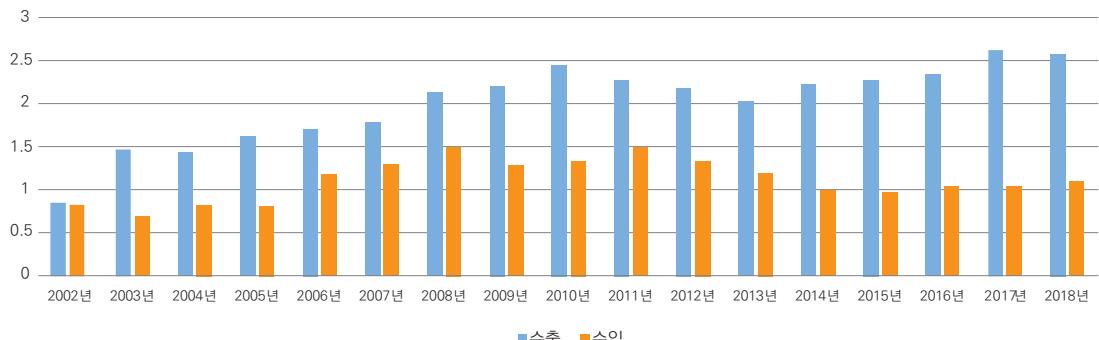
주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K-stat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비중



[단위 : %]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K-stat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비중

[단위 : %]

구분	수출	수입	구분	수출	수입
2002년	0.85	0.82	2011년	2.28	1.51
2003년	1.47	0.69	2012년	2.18	1.33
2004년	1.43	0.82	2013년	2.03	1.2
2005년	1.62	0.81	2014년	2.23	1.0
2006년	1.7	1.18	2015년	2.28	0.97
2007년	1.78	1.3	2016년	2.34	1.03
2008년	2.13	1.51	2017년	2.62	1.03
2009년	2.2	1.28	2018년	2.58	1.1
2010년	2.45	1.33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K-stat

한-인도 CEPA 산업별 수출 현황(2018년)



- 한-인도 CEPA 산업별 수출 활용률은 71%임
- FTA 특혜대상금액이 높은 산업은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순임
- 기계류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수출하면서 FTA 활용률 역시 평균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인도 CEPA 산업별 수출활용률(2018)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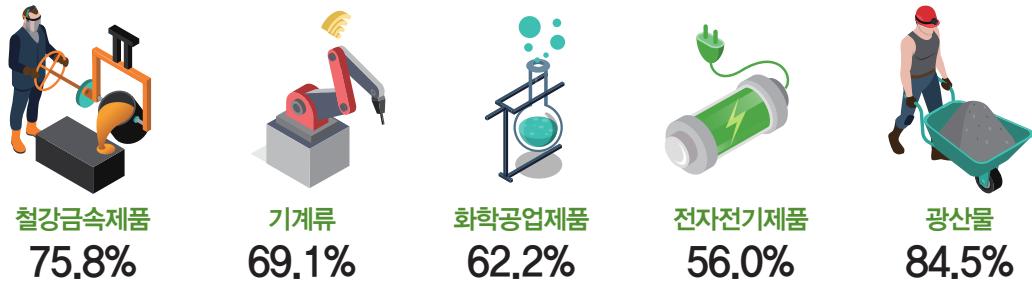
MTI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수출금액	활용률
철강금속제품	2,675	3,531	3,853	75.8
기계류	1,633	2,364	3,465	69.1
전자전기제품	453	809	3,072	56.0
화학공업제품	856	1,377	1,903	62.2
플라스틱 · 고무 및 가죽제품	540	728	1,748	74.2
광산물	668	790	846	84.5
농림수산물	232	259	379	89.6
섬유류	26	48	198	54.6
잡제품	28	116	124	24.4
생활용품	0.5	1.4	14	37.6
전체	7,113	10,024	15,602	71.0

한-인도 CEPA 산업별 수출활용률(2018)

■ 그러나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은 모두 FTA활용률이 평균 이하임

- 특히, 전체 수출금액은 전자전기제품이 더 크나, 특혜대상금액은 화학공업제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 모두 FTA활용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화학공업제품의 FTA활용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됨

FTA 특혜대상금액이 높은 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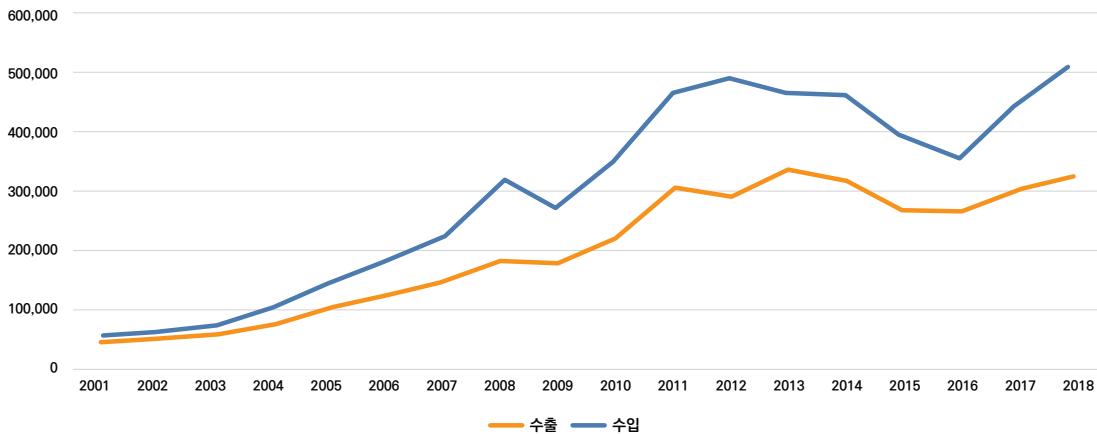
FTA활용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22



인도의 對세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ITC Statistics

- 인도의 對세계 수출동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3,000억불을 돌파 이후 연도별로 등락을 크게 보였으나, 2015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한편 수입의 경우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구조로, 2012년 4,889억불을 수입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

인도의 對세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연도	수출	수입
2001	43,878	50,671	2010	220,408	350,029
2002	50,098	57,453	2011	301,483	462,403
2003	59,361	72,431	2012	289,565	488,976
2004	75,904	98,981	2013	336,611	466,046
2005	100,353	140,862	2014	317,545	459,369
2006	121,201	178,212	2015	264,381	390,745
2007	145,898	218,645	2016	260,327	356,705
2008	181,861	315,712	2017	295,847	444,053
2009	176,765	266,402	2018	323,056	507,580

자료 : ITC Statistics

인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수출) 2018년 기준으로 인도의 對세계 수출액은 3,230억불이었으며,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중국,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의 순임
- 인도의 對미국 수출 상위 품목은 귀석 · 귀금속(제71류), 의료용품(제30류), 기계류(제84류) 순이었음
 - * 귀석 · 귀금속(제71류) : 10,483(백만 달러), 의료용품(제30류) : 5,024(백만 달러), 기계류(제84류) : 3,713(백만 달러)
- 한편 우리나라 18번째 수출 상대국으로 수출 비중은 1.5%를 차지함

인도 對세계 수출 상위 2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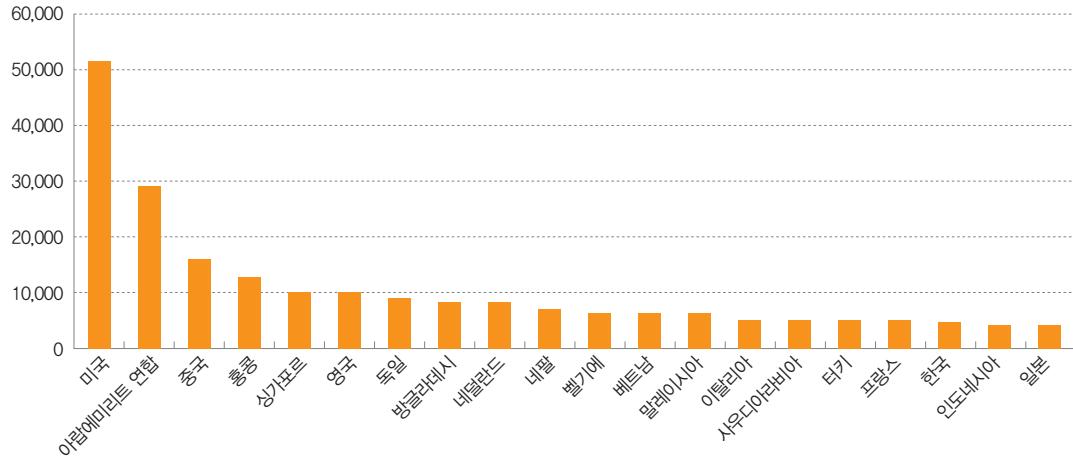
	국가명	수출금액		비중
		2017	2018	
1	미국	46,059	51,602	16.0
2	아랍에미리트 연합	30,012	29,003	9.0
3	중국	12,492	16,404	5.1
4	홍콩	15,016	13,208	4.1
5	싱가포르	11,573	10,427	3.2
6	영국	8,962	9,780	3.0
7	독일	8,241	8,970	2.8
8	방글라데시	7,209	8,752	2.7
9	네덜란드	5,432	8,652	2.7
10	네파	5,518	7,292	2.3
11	벨기에	6,215	6,815	2.1
12	베트남	8,120	6,708	2.1
13	말레이시아	5,536	6,515	2.0
14	이탈리아	5,654	5,532	1.7
15	사우디아라비아	5,220	5,506	1.7
16	터키	4,923	5,357	1.7
17	프랑스	5,040	5,290	1.6
18	한국	4,370	4,800	1.5
19	인도네시아	3,762	4,787	1.5
20	일본	4,503	4,741	1.5

주 :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개 국가

자료 : ITC Statistics

인도 對세계 수출 상위 20개국(2018)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개 국가

자료 : ITC Statistics

- (수입) 인도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14.5%), 미국(6.4%), 사우디아라비아(5.6%), 아랍에미리트 연합(5.3%) 및 이라크(4.5%) 순으로 나타났음
- 2018년 기준으로 인도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상위 품목은 전기제품(제85류), 기계류(제84류), 유기화학품(제29류) 순이었음
- 전기제품(제85류) : 23,349(백만 달러), 기계류(제84류) : 13,650(백만 달러), 유기화학품(제29류) : 8,520(백만 달러)
- 한편 우리나라는 7번째 수입 상대국으로 수입 비중은 3.2%를 차지함

인도 對세계 수입 상위 2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2017	2018	
1	중국	71,971	73,738	14.5
2	미국	24,099	32,645	6.4
3	사우디아라비아	21,063	28,362	5.6
4	아랍에미리트 연합	23,088	26,780	5.3
5	이라크	15,309	23,061	4.5
6	스위스	20,393	18,028	3.6
7	한국	16,111	16,364	3.2
8	인도네시아	16,229	16,026	3.2
9	홍콩	11,004	15,899	3.1
10	이란	11,058	14,769	2.9
11	싱가포르	7,223	14,326	2.8
12	호주	14,319	14,135	2.8
13	독일	12,671	13,856	2.7
14	일본	10,471	12,531	2.5
15	나이지리아	8,340	11,167	2.2
16	카타르	8,093	10,550	2.1
17	말레이시아	8,900	10,413	2.1
18	벨기에	5,957	9,486	1.9
19	쿠웨이트	6,122	7,846	1.5
20	태국	6,463	7,669	1.5

주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20개 국가

자료 : ITC Statistics

인도 對세계 수입 상위 20개국(2018)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20개 국가

자료 : ITC Statistics

인도의 對세계 품목별 교역 동향



- (수출) 인도의 對세계 수출 상위품목으로는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 귀석·귀금속, 기계류, 승용자동차 및 유기화학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았음
 - 그 중 최대 수출품목인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의 경우 2017년 동기간 대비 큰 폭(34.5%)으로 증가했음
 - 한편 주요 수출품목인 귀석·귀금속, 철강, 비편물제 의류는 2017년 동기간 보다 각각 5.8%, 14.7%, 9.6% 감소했음

인도의 對세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류 표제)	수출금액		증감률
		2017	2018	
27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	35,896	48,293	34.5%
71	귀석·귀금속	42,573	40,096	-5.8%
84	기계류	16,652	20,404	22.5%
87	승용자동차 등	16,227	18,239	12.4%
29	유기화학품	13,572	17,743	30.7%
30	의료용품	12,895	14,277	10.7%
85	전기제품	8,801	11,788	33.9%
72	철강	11,700	9,975	-14.7%
52	면	6,898	8,130	17.9%
62	비편물제의류	8,985	8,126	-9.6%

제3회 | CEPA 활용방안

27

주 :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자료 : ITC Statistics

인도 對세계 주요 수출 품목(2018)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자료 : ITC Statistics

- (수입) 인도의 對세계 수입 상위품목으로는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로 전체 수입액의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귀석·귀금속, 전기제품, 기계류 및 유기화학품 중심으로 수입이 많았음
- 특히 인도는 많은 양의 원유 및 귀금속 제품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량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기준으로 상위 10대 수입 품목 중 귀석·귀금속, 동식물성 지방 제품들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했음

인도의 對세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류 표제)	수입금액		증감률
		2017	2018	
27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	123,028	168,590	37.0
71	귀석·귀금속	74,369	65,027	-12.6
85	전기제품	46,858	52,400	11.8
84	기계류	36,002	43,232	20.1
29	유기화학품	17,971	22,579	25.6
39	플라스틱	13,022	15,191	16.7
72	철강	9,968	11,969	20.1
15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11,876	10,165	-14.4
90	광·정밀기기	8,443	9,456	12.0
28	무기화학품	5,594	7,262	29.8

주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자료 : ITC Statistics

인도 對세계 주요 수입 품목(2018)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자료 : ITC Statistics

제Ⅱ절
한-인도 CEPA 활용방안

02

**한-인도 CEPA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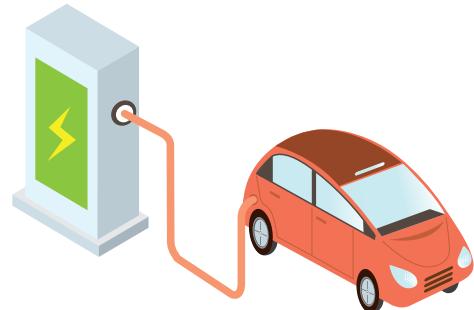
한-인도 CEPA 수출유망품목¹⁾

:『전기 축전지』, 『식품가공기계』, 『인공관절』, 『반도체 제조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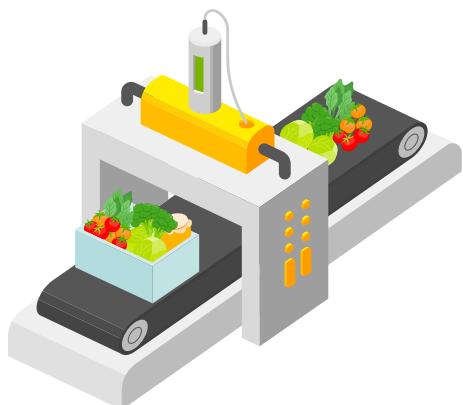
전기 축전지

- (선정사유) 인도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2016년 기준) 많은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인도 자동차 산업 규모는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시장동향) 2016년 인도의 납축전지 시장규모는 44억 7천만 달러이며, 2017년 기준 수입액은 9억 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28% 증가
- (진출방안) 인도 정부는 전기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임. 따라서 현재 꾸준히 수요가 많은 자동차 배터리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필요



식품가공기계

- (선정사유) 인도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은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6번째로 큰 규모임(IBEF). 이에 식품가공업 규모 역시 식품시장 내에서 32% 점유
- (시장동향) 최근 인도 내 채소 및 과일 가공기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총 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큰 폭 증가
- (진출방안) 인도 정부는 Food Park를 설립하는 등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동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자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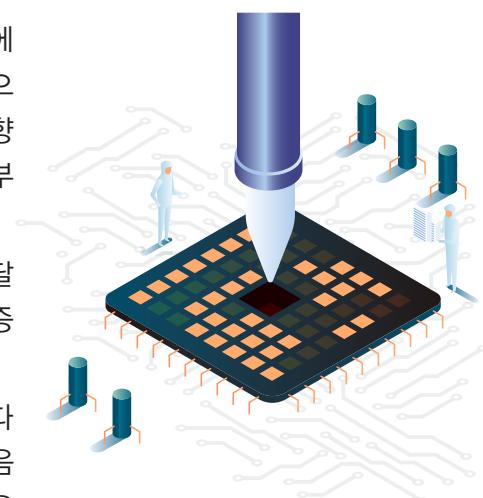
인공관절

- (선정사유) 인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골관절염 환자가 네번째로 흔한 질환이 될 것으로 예측함
- (시장동향) 인도 시장조사업체 Sathguru(2016)에 따르면, 인도의 정형외과용 인공관절 시장규모는 노인인구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 (진출방안) 인도 현지 무역업체를 통한 제품 수출 및 제조공장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 필요



반도체 제조기기

- (선정사유)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순수입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전기전자 부품(PCBs 등)에 대한 관세를 상향 조정함. 따라서 반도체 제조기기를 비롯한 전기전자 부품 제조용 기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시장동향) 인도 반도체 시장규모는 2015년 145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535억 달러로 연평균 2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진출방안) 일부 지역(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노이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산업이 육성되고 있음에 따라 동 지역 중심 위주의 수출 및 투자진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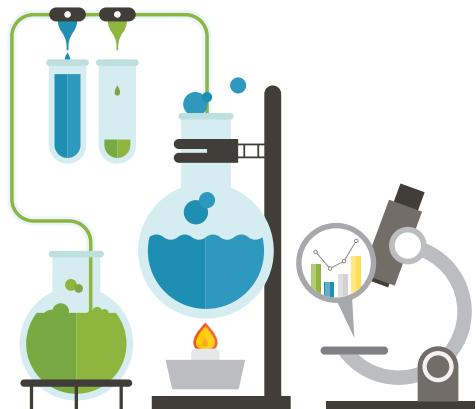


인도 5대 유망 산업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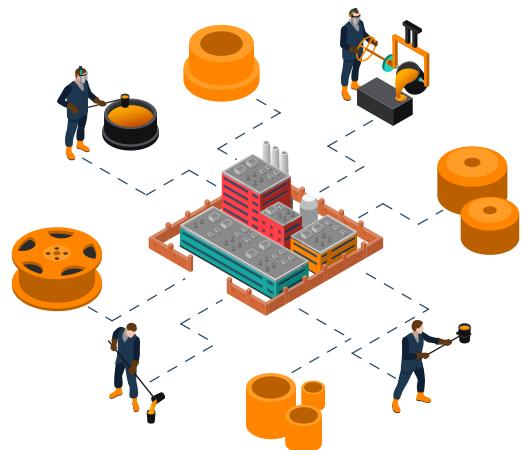
화학

- 인도상공연합(ASSOCAM)은 인도석유화학시장이 2020년 1,0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향후 유망 분야는 중합체와 플라스틱 부분으로 전망됨
- 인도 화학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인도 경제 성장률과 화학 전문 인력 보유, R&D 역량 및 수출 수요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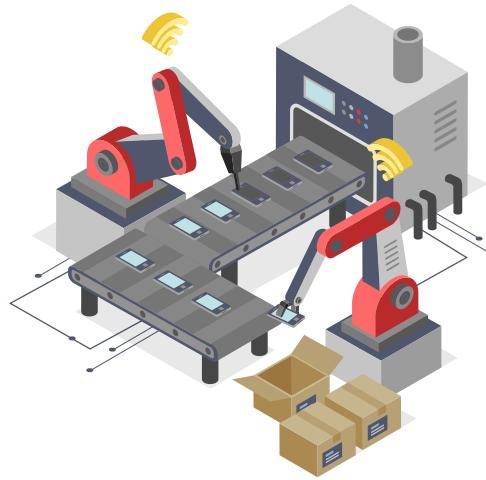
기초 및 조립금속

- 인도는 주요 금속(철강석, 알루미늄 등) 생산국가인 동시에 소비임국. 특히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시행으로 철강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게다가 전기전자 산업의 발달, 건축분야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알루미늄에 대해 수요 증가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인도로 주로 철, 합금철, 못·나사·너트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 역시 비슷한 제품군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 구도를 보임



기계

- 최근 인도 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조업 육성 및 스마트 시티 건설 등임. 이러한 정부 정책에 기인하여 기계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면서 특수산업용 기계, 펌프 및 압축기, 가열 및 냉각장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광산용 기계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임
- 한편 우리나라는 주로 종이 · 펄프 제조 기계, 특수산업용 기타 기계기구를 주로 수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기 및 광학기기

- 2022년까지 인도 전기 분야는 1,0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인도의 전기기기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 전력, 자동차, 철강, 내구 소비재 등의 부분이 성장했기 때문임
- 특히 인도정부는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인도 자국내 디지털 향상 및 전자 정부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계획 발표
- 게다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20년까지 자국내 전자제품의 생산 확대는 물론 전국 규모의 인터넷 인프라 확충 계획을 실시함



수송기기

-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2020년까지 600만 대 이상의 시장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동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요인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인한 자국내 수요 증가, 다국적 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 등에 기인함
- 수송기기 분야 중 수입이 많은 분야는 자동차 부품과 엔진 등과 같이 현지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물품들이 다수



03

**류별 활용가능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인도 CEPA HS별 수출 현황(2018년)



- 한-인도 CEPA 활용 수출과 관련해, 아래의 표는 HS 2단위(류)를 중심으로 FTA특혜대상금액 상위 10개 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인도 상위 10대 주요수출품목(류별 특혜대상금액 순 10개)

[단위 : 천달러, %]

류	표제	FTA특혜 대상금액	FTA활용률
72	 철강	2,409,743	78.5
84	 기계류	1,632,578	67.4
29	 유기화학품	808,603	75.3
27	 광물성연료	780,839	85.2
39	 플라스틱	723,803	74.4
87	 자동차	549,914	77.8
85	 전기기기	462,832	54.3
79	 아연	403,916	97.8
90	 광학 · 측정 · 의료기기	345,996	58.2
48	 종이와 그 제품	264,182	24.7
전체		10,023,793	71.0

한-인도 CEPA 주요 활용가능품목 추천



한-인도 CEPA 활용저조 품목 선정

1. 수출활용률 평균 71.0% 안 되는 2단위 품목 : 총 48개 류

2. 평균 71.0% 안 되는 품목 중 FTA 활용가능 금액기준
상위 10개 2단위 품목 선정

3. 각 2단위 품목 중 단일품목기준 대상금액 1백만 달러 이상, 활
용률 50% 미만 품목

- 2단위 품목 수 : 3,964개
- 1백만 달러 이상 품목 수 : 497개
- FTA활용률 50%미만 품목 수 : 170개

4. 위 단계까지 거친 품목 중 FTA대상금액이 가장 많은 품목을 활
용저조 품목으로 선정

- 위의 선정절차에 따라 한-인도 CEPA 활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아래와 같음

한-인도 CEPA 10대 주요 활용가능품목

HS2	HS10	품 명
84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5	8537.2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90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48	4810.19-100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
76	7606.12-0000	알루미늄의 판, 시트, 스트립(합금)
73	7306.30-109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
78	7801.99-2090	납의 괴
82	8207.30-9000	프레싱용 스템핑용 편침용 공구
38	3822.00-1011	뒤편을 보강한 조제된 진단용 시약
32	3214.10-1090	기타 그 밖의 매스틱

※ 제93류(무기류)는 FTA 활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제외

1. 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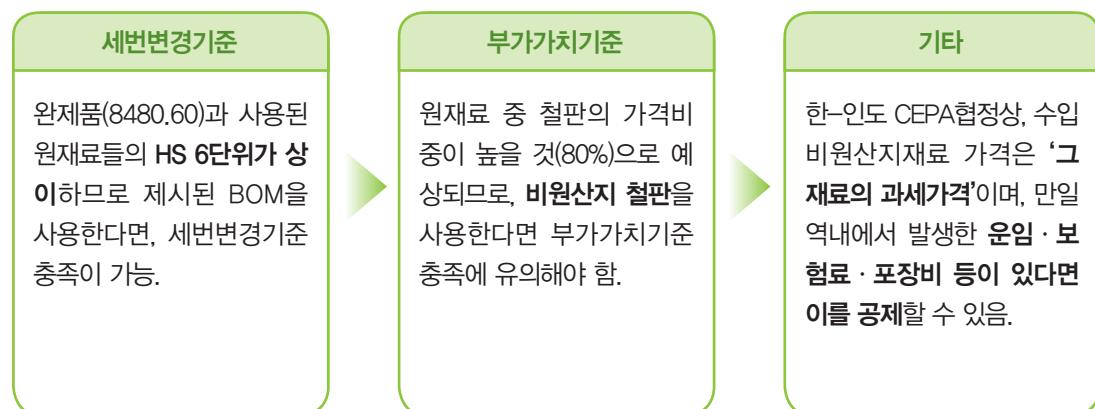
	류 (FTA 활용률)	제84류(67.4%)
	세 부 품 명	몰드(Mould) (제8480.60-00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 (ingot)용은 제외한다] · 금속탄화물 · 유리 · 광물성 물질 · 고무 ·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8486.60-00호	기본세율 : 7.5% CEPA : 5%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철 판	7209	80
볼트, 너트	7318	10
ABS수지	3903.30	10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



2. 제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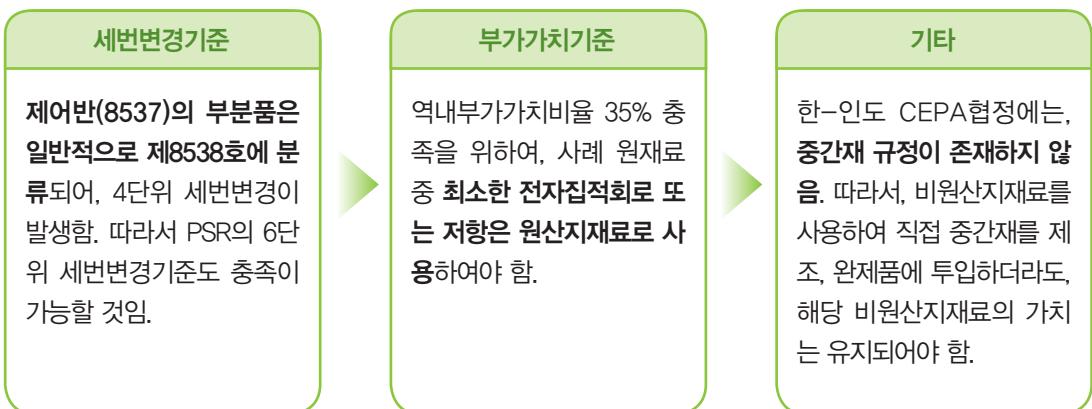
	류 (FTA활용률)	제85류(54.3%)
	세 부 품 명	제어반(Control panel) (제8537.20-90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8537.20-00호	기본세율 : 10% CEPA : 0%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저항	8533	50
전자집적회로	8542	40
부분품	8538	10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



3. 초음파 영상진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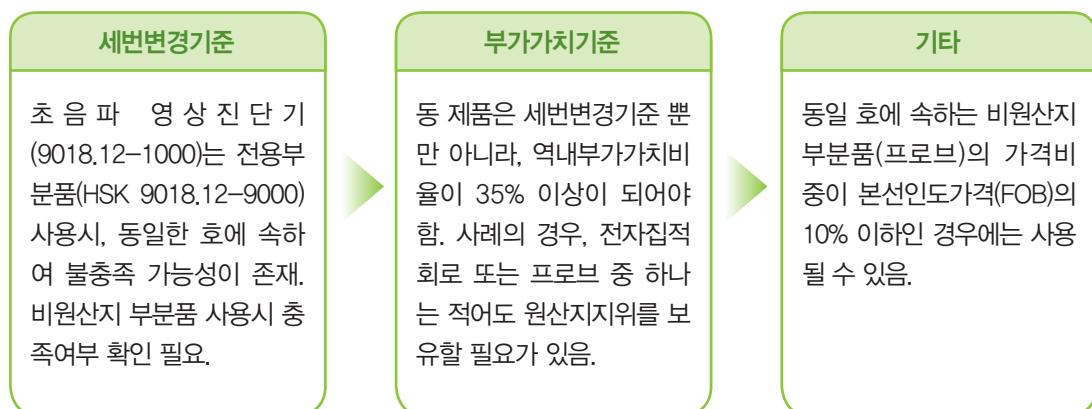
	류 (FTA활용률)	제90류(58.2%)
	세 부 품 명	초음파 영상진단기 (제9018.12-10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 -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9018.12-90호	기본세율 : 10% CEPA : 0%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전자집적회로	8542	30
케이스, 부분품	8473.30	10
프로브	9018.12	40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



4. 인쇄용 · 필기용 종이



류 (FTA활용률)	제48류(24.7%)
세 부 품 명	인쇄용 · 필기용 종이 (제4810.19-1000호)

-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
- 인쇄용 · 필기용 종이와 판지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4810.19-90호	기본세율 : 10% CEPA : 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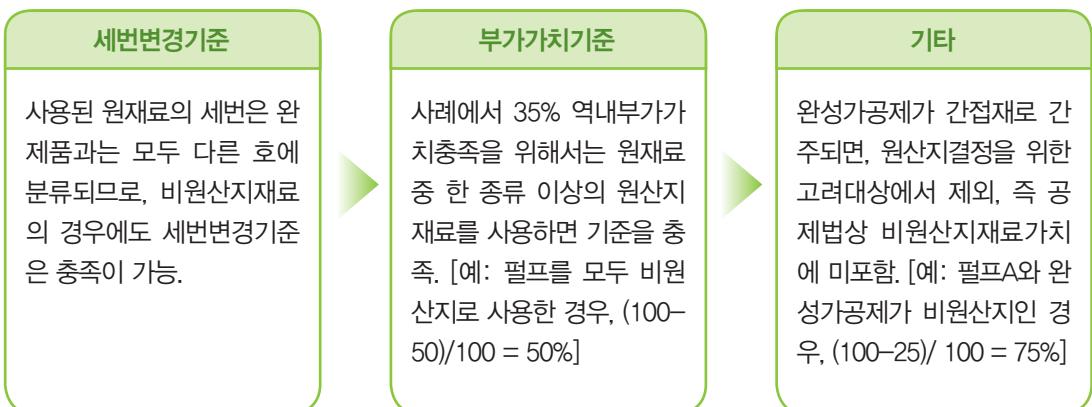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펄프 A	4703	25
펄프 B	4705	25
완성가공제	3809	20

42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



5. 알루미늄의 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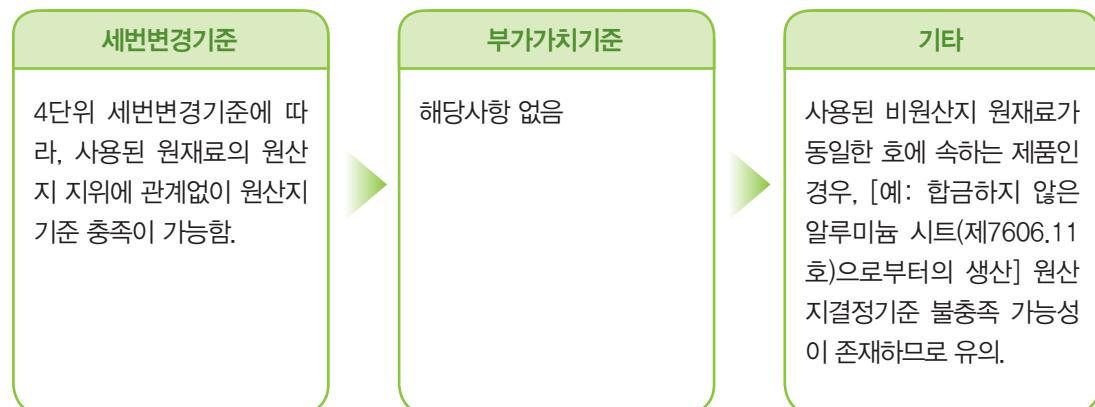
	류 (FTA활용률)	제76류(49.2%)
	세 부 품 명	알루미늄의 시트 (7606.1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의 판 · 시트(sheet) · <u>스트립</u>(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7606.12-00호	기본세율 : 7.5% CEPA : 0%

주요 원자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알루미늄 괴	7601.10	—
마그네슘 괴	8104.11	—
크롬	8112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 철강제의 관

	류 (FTA활용률)	제73류(66.6%)
	세 부 품 명	철강제의 관 (7306.30-1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기타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7306.30-90호	기본세율 : 15% CEPA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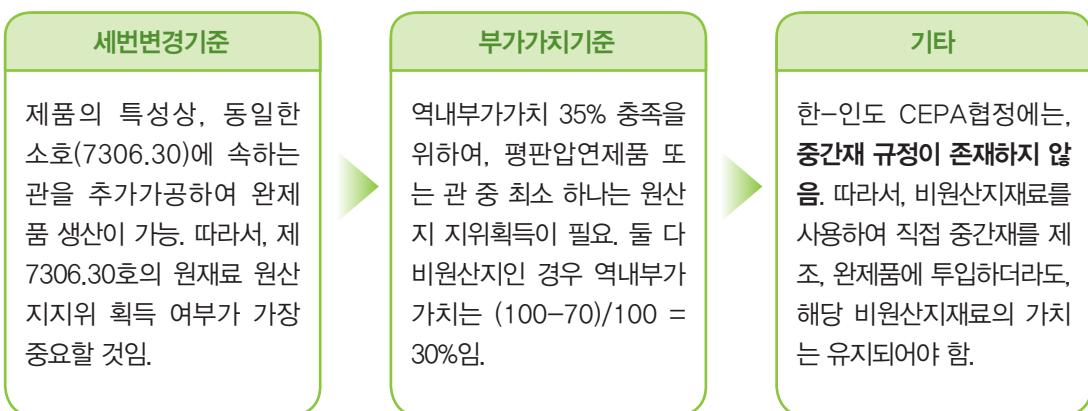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철강 평판압연제품	7208.51	40
철강제의 관	7306.30	30
ABS	3903.3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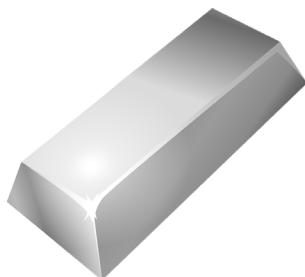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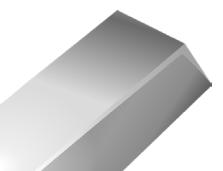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



7. 납의 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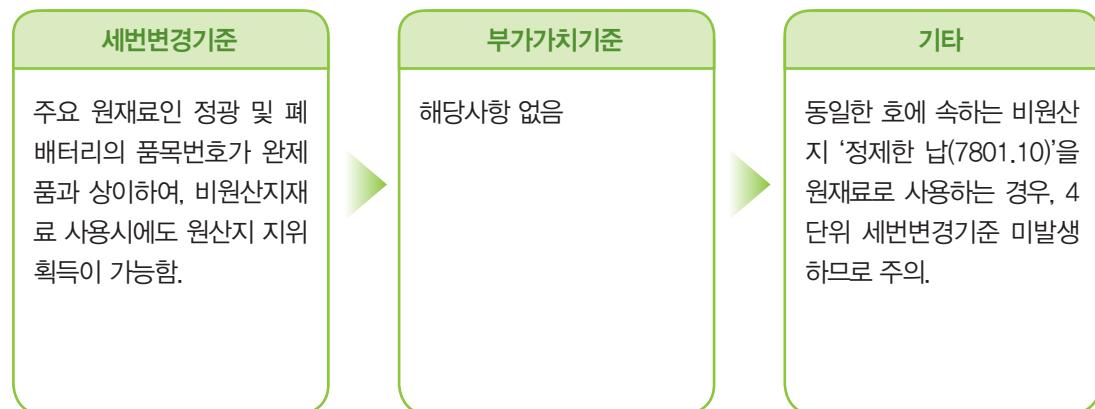
	류 (FTA활용률)	제78류(57.0%)
	세 부 품 명	납의 괴 (7801.99-2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의 괴(塊) – 기타 	

주요 원자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납 정광	2607.00	—
폐배터리	8548.10	—
가성소다	2815.12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 프레싱용 공구

	류 (FTA활용률)	제82류(59.3%)
	세 부 품 명	프레싱용 공구 (8207.30-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 프레싱용, 스템핑용, 편침용 공구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8207.30-00호	기본세율 : 10% CEPA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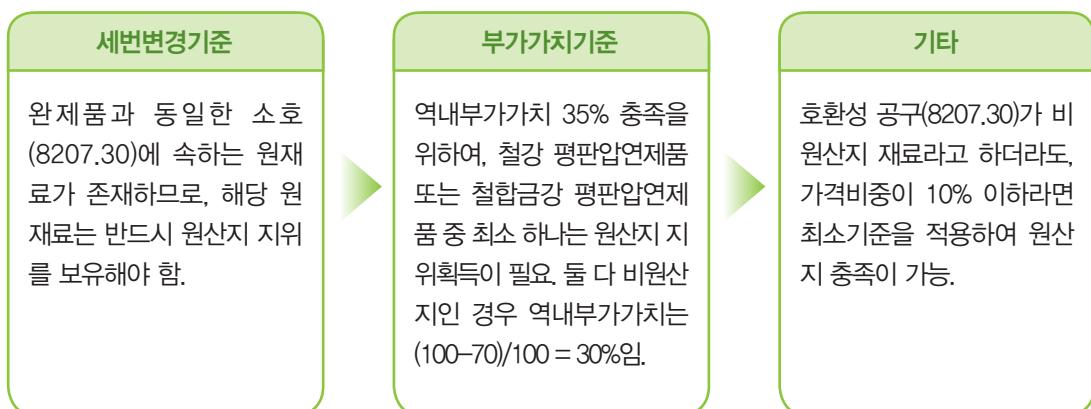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철강 평판압연제품	7208.51	40
철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26.91	30
호환성 공구	8207.30	10

46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



9. 소매포장한 시약

	류 (FTA활용률)	제38류(62.1%)
	세 부 품 명	소매포장 시약 (3822.00-1011)
<p>–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 ·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p>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3822.00-90호	기본세율 : 20% CEPA : 0%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종이	4811	10
콜로이드 금	2843.10	10
향원	3002	10
콘주게이트	3822.00	10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시약에는 동일한 소호 (3822.00)에 속하는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획득이 필요.	제품 특성상 원재료가격비중이 높지 않아, 부가가치기준 충족 가능성은 높음. 다만, 다양한 구매 원재료의 가격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제3822호의 제품은 품목분류상이 사례로 분류된 적이 있어,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

10. 실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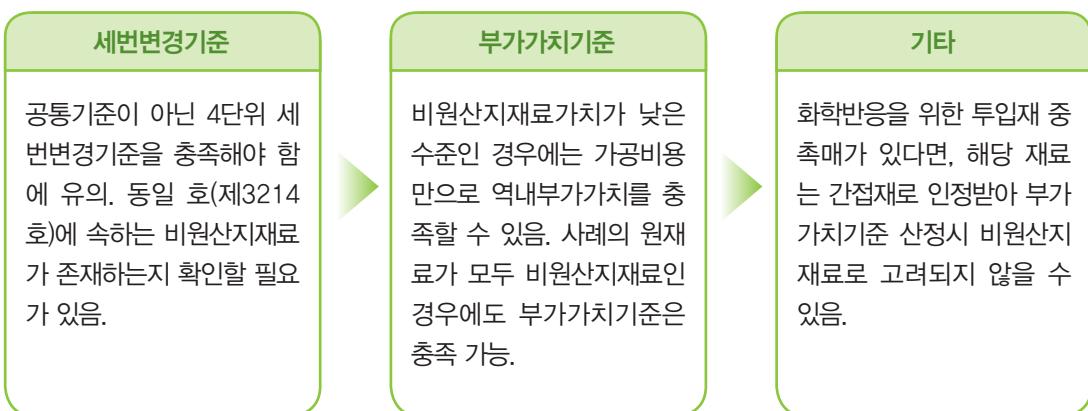
	류 (FTA활용률)	제32류(43.2%)
	세 부 품 명	실란트 (제3214.10-1090호)
<p>–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p>		
수출 세율정보 (2019)	인도 HS 제3214.10-00호	기본세율 : 10% CEPA : 0%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가격비중(%)
실리콘수지	3910.00	25
유 · 무기 화합물	2931.90	10
무기 비금속산화물	2811	10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對인도 상위 10대 주요수출산업(류별 특혜대상금액 순)



[단위 : 천달러, %]

류	류 표제	실제적용 수출금액	FTA대상 수출금액	FTA 활용률
72	철강	1,890,713	2,409,743	78.5
84	기계류	1,099,677	1,632,578	67.4
29	유기화학품	608,602	808,603	75.3
27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	665,559	780,839	85.2
39	플라스틱	538,623	723,803	74.4
87	승용자동차 등	428,108	549,914	77.8
85	전기제품	251,365	462,832	54.3
79	아연	394,871	403,916	97.8
90	광·정밀기기	201,413	345,996	58.2
48	종이와 그 제품	65,289	264,182	24.7
76	알루미늄	115,574	235,030	49.2
40	고무	220,666	229,175	96.3
73	철강제품	120,744	181,432	66.6
78	납	97,056	170,137	57
82	비(卑)금속 공구	96,995	163,464	59.3
38	화학공업제품	93,257	150,275	62.1
93	무기	27,774	62,310	44.6
32	염료·페인트	26,321	60,985	43.2
71	귀석·귀금속	367	52,748	0.7
94	가구	21,114	52,117	40.5
74	동	10,894	46,274	23.5
34	비누·왁스	32,785	35,896	91.3
28	무기화학품	21,082	35,508	59.4
83	금속제품	23,590	31,559	74.7
56	워딩·부직포	6,753	13,489	50.1
60	편물	2,663	11,993	22.2
30	의료용품	2,377	11,946	19.9
33	정유·화장품 등	6,216	11,454	54.3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등	3,191	11,239	28.4
86	철도차량 등	8,494	11,132	76.3
55	인조스테이플	9,861	10,528	93.7

[단위 : 천달러, %]

류	류 표제	실제적용 수출금액	FTA대상 수출금액	FTA 활용률
68	석 · 시멘트	1,945	8,958	21.7
88	항공기	—	6,495	0
31	비료	3,186	5,697	55.9
54	인조필라멘트	4,537	5,641	80.4
41	가죽	1,604	4,105	39.1
19	곡물곡분제품	1,118	2,944	38
63	기타섬유제품	1,806	2,778	65
59	도포직물	183	2,618	7
70	유리	2,035	2,494	81.6
21	조제식료품	85	1,987	4.3
37	필름 · 인화지	914	1,159	78.9
12	종자 · 인삼	515	934	55.2
49	서적 · 신문	162	878	18.5
96	잡품	411	872	47.1
13	식물성 수액	529	681	77.7
81	기타금속	290	659	44.1
58	특수직물	315	591	53.3
69	도자제품	445	563	79.1
17	당류설탕과자	9	553	1.6
62	비편물제의류	176	517	34.1
95	완구운동용구	16	326	4.9
44	목재	90	282	32
25	토석류 · 소금	—	205	0
92	악기	90	132	68.2
97	예술 · 골동품	15	124	12.4
61	편물제의류	49	112	43.8
22	음류주류	—	110	0
64	신발	20	96	20.8
47	펄프	42	81	51.6
65	모자	22	51	43.5
16	육 · 어류제품	—	43	0
20	채소과실제품	—	8	0
05	동물성생산품	1	1	100
합 계		7,112,608	10,023,793	71

제Ⅱ절
한-인도 CEPA 활용방안

04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 FTA 협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적용 받음
 -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으로 나누어지며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협정에서 정한 품목에 대하여(제1류~제97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설정함
 - 일반기준은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다시 구분되며, 그 중 공통기준은 원산지상품이라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나 특례기준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판정 시 충족을 용이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임

		주요 규정
일반기준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생산기준 – 영역원칙 (역내생산 원칙) – 충분가공원칙 (불인정공정) – 운송요건
	특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대체기능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 –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 운송 포장 · 용기 – 재수입물품
품목별 원산지기준	HS 6단위별 원산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p>※ 위 3 가지 기준을 단일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 형태로 설정</p>

일반기준(공통기준)



완전생산기준

-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경우를 의미함
- 동 품목에는 광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산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 물품,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영역(영해) 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과 이들의 가공품, 영역(영해) 밖 채취상품, 폐물·부스러기·고물·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등이 포함됨

구분		한-인도 CEPA 완전생산물품 설명
1	광물성 생산품	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원료 또는 광물성 상품
2	식물성 생산품	당사국 역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채집 또는 수집
3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상품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산 동물, 그리고 이로부터 획득된 상품
4	수렵·어로·양식	당사국 영토 내 수렵 또는 덫사냥,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 어로 또는 양식
5	영역 밖 어획물	당사국 등록(등기) 및 당사국 국기 게양 선박에 의해 당사국 영해 밖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6	영역 밖 채취상품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개발권을 가지고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7	폐기물·부수러기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수러기를 포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8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당사국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영역원칙(역내생산 원칙)

- 영역원칙이란 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등이 당사국 영역 내에서 중단 없이 생산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비당사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원칙임
- 한-인도 CEPA 제3.13조에서 영역원칙에 대해 규정함

한-인도 CEPA <제3.13조 영역원칙>

1. 제3.7조 및 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2조부터 제3.12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한다.
2.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대하여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충분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은 당시국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본 원칙임
 - 충분가공원칙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인정됨

한-인도 CEPA 〈제3.6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다음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3.4조의 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 가. 상품이 운송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존작업
 - 나. 포장의 변경, 그리고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 다. 먼지 · 산화물 · 기름 ·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세척 · 세정 또는 제거
 - 라.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 마. 체질 · 선별 · 구분 · 분류 · 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매칭
 - 바. 단순 결합공정 · 라벨링 · 프레싱 ·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 사. 종횡 재단 및 감침질, 또는 특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 아. 끈 · 띠 · 구슬 · 코드 · 고리 및 아일릿 같은 장식품을 함께 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 트리밍 및/또는 결합
 - 자. 원사 · 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 물품에 대한 탈색 · 방수 · 디케이팅 · 수축 · 머서라이징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성 공정
 - 차. 곡물 및 쌀의 탈각 · 부분 또는 전체 표백 · 연마 및 도정
 - 카.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 타. 탈피 · 씨제거 및 탈각
 - 파. 박편 · 파쇄 · 압착 · 썰기 · 연질화 및 뼈제거
 - 하. 연마 ·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및 재포장
 - 거. 병 · 캔 · 플라스틱 · 가방 · 케이스 · 상자에 단순한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너. 표식 · 라벨 · 로고 및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시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 더.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 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을 부품으로 해체
 - 머.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 버. 상품의 특성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 서. 동물의 도축, 또는
 - 어. 가호부터 서호까지에 언급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의 조합

직접운송요건

- 직접운송이란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수출당사국에서 선적되어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원칙을 의미
- 한-인도 CEPA에서도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비당사국을 거쳐 운송된(제3국 경유·환적) 물품도 일정 조건 하에서 직접운송 된 것으로 간주하여 협정을 적용

한-인도 CEPA <제3.15조 직접운송>

-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

-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선적 및 환적지점이 나타나는 선하증권 또는 운송장, 경유국의 세관당국이 발행한 비가공 및 단순경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한-인도 CEPA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 제1항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상품이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

일반기준(특례기준)



- 특례기준은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충(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임
- 특례기준으로는 누적조항, 최소허용기준,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 예비부품 · 공구,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등이 포함

누적기준

- 누적(accumulation)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한-인도 CEPA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도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임
- 한-인도 CEPA 제3.7조에서 누적조항을 규정

한-인도 CEPA <제3.7조 누적조항>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최소허용수준

- 최소허용수준은 최종제품과 동일한 세번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더라도, 이것이 소량 사용된다면 원산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
- 최소허용수준은 일반품목군, 농축수산물, 섬유류 제품으로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상품 가격의 10% 또는 중량의 7% 수준이 일반적임

한-인도 CEPA <제3.8조 최소허용수준>

1. 생산의 최종 공정에서 제3.4조 및 부속서 3-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나.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체가능 물품

- 대체가능물품이란 동종 동질의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함
- 한–인도 CEPA에서는 재료에 대하여만 대체가능물품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대체가능물품은 원칙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분리방법인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관리·결정할수 있도록 허용함
- 재고물품관리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으며, 생산자는 하나의 재고관리 기법을 선택했다면 당해 회계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함

한–인도 CEPA 〈제3.1조 정의〉 및 〈제3.12조 대체가능 재료〉

〈제3.1조 정의〉

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제3.12조 대체가능 재료〉

1.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보관하는 동안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동일하고 교환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재고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회계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 방법은 그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적용 그리고 보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 가. 획득된 및/또는 재고로 보관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간접재료

-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8가지 상품을 포함함
-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간접재료가 사용되어 제조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되지 않음

한-인도 CEPA 〈제3.1조 간접재료 정의〉 및 〈제3.5조 간접재료〉

〈제3.1조 정의〉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연료 및 에너지
- 나. 도구·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을 포함하는 부품 및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설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 및 용해제, 그리고
-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제3.5조 간접재료〉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

-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가 본체 물품과 별도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하고, 수량 및 가치가 수출 당시국의 국내 본체 물품에 대한 표준 무역 관행 이내이어야 인정됨
- 한-인도 CEPA에서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는 본체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세번변경기준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나, 부가가치기준에서는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됨

한-인도 FTA <제3.9조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표준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 그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 그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 및 가치가 수출 당시국의 국내 시장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준 무역 관행이어야 하며,
-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그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소매판매 및 수송용 포장 재료 및 용기

- 한-인도 CEPA에서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는 본체 물품의 세번변경기준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나,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됨
-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범위와 예시는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포장·용기로서의 용도와 특성을 지니고 내용물과 같은 세 번에 분류되며, 함께 공급되어야 함
-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는 본체 물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되지 않음

한-인도 CEPA <제3.10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한-인도 CEPA <제3.11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수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재수입물품

-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어도 일단 수출되면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재수입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재수입한 물품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재수입물품이 수출된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품에 한해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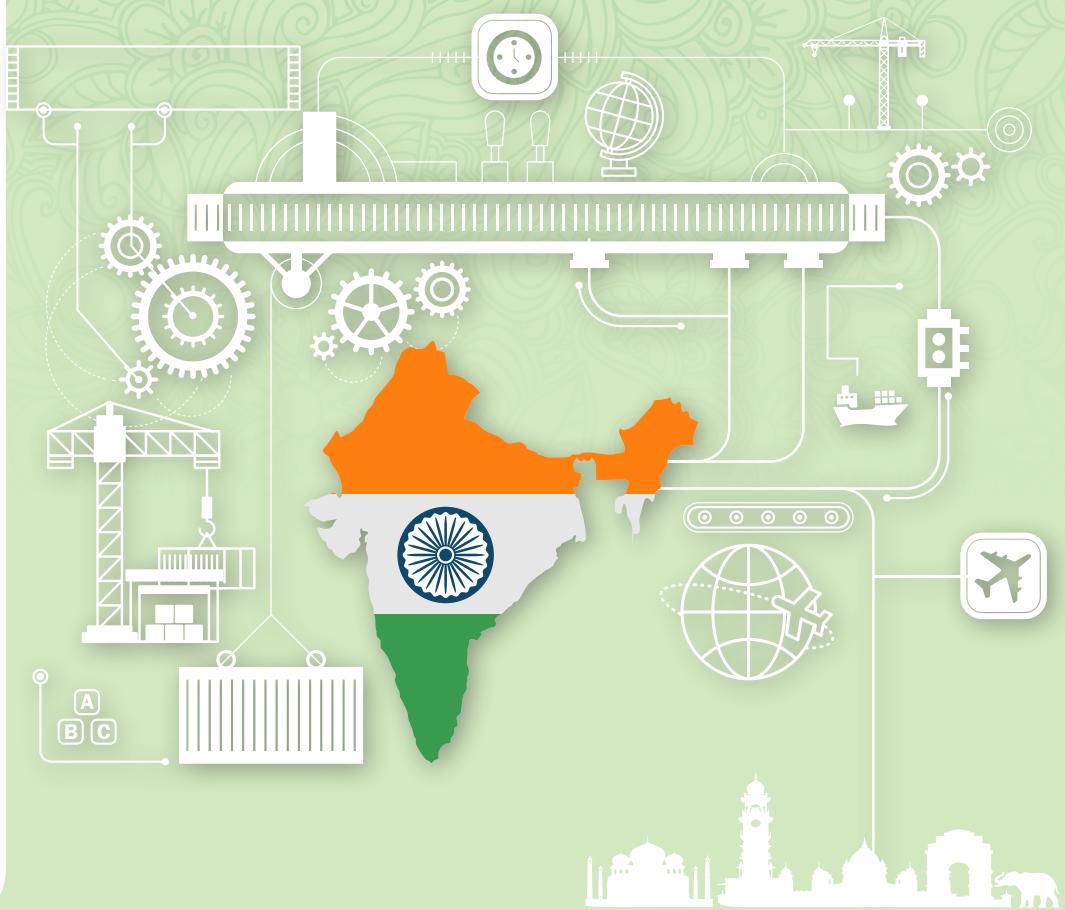
한-인도 CEPA <제3.13조 영역원칙>

2.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대하여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은 완전생산품 이외의 물품의 원산지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물품의 실질변형이 이루어졌는지 판정
 - 주로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세가지 기준을 사용
-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제1류부터 제97류의 모든 HS 6단위 품목에 개별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설정
 - 그러나, 한-인도 CEPA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설정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규정을 적용

공통기준		기타
협정규정	약어	
<p>1. 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제조 공정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다면, 상품이 제3.2조나호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p>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p> <p>나. 부속서 3-가호에 규정된 가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p> <p>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p> <p>2)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p>	CTSH + RVC 35%	각 HS 6단위별 개별 규정





신남방국

인도편 India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II

인도의 통관 절차

1. 통관 조직 및 절차
2. 한-인도 CEPA 특혜적용 절차
3. 인도의 주요 인증 제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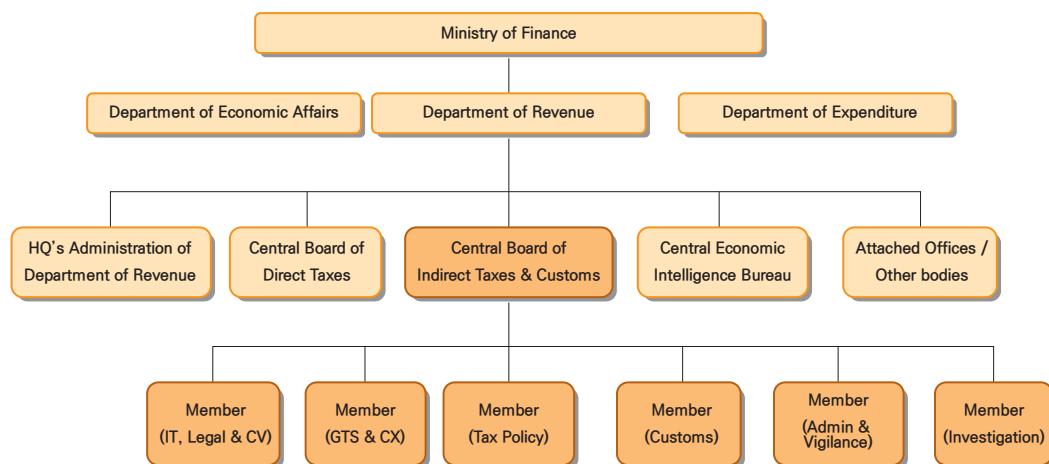
통관 조직 및 절차

관세 · 간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and Customs: CBIC)

설립목적 및 주요활동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에 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 CBDT)와 관세 · 간접세위원회(CBIC)가 소속됨
- 관세 · 간접세위원회(CBIC)는 관세, 소비세, CGST(중앙GST) 및 IGST(거래세) 등 간접세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마약 및 밀수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
※ 2017년 7월부터 명칭이 소비세 · 관세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CBEC)에서 관세 · 간접세위원회(CBIC)로 변경됨

인도 통관 조직도



자료 : 인도 관세 · 간접세위원회, <http://www.cbic.gov.in/htdocs-cbec/whoweare/whoweare> (검색일자: '19.5.21.)

CBIC의 주요기능

- 관세, 통합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대하여 부과 · 징수
-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 평가, 현품 검사 및 통관
- 인도 수출 기업 장려 정책 시행
- 과다납부 관세, 협정세율 사후 적용,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환급 등

인도의 통관법령



관세법
Customs Act

1962.12.13. 제정
2018년 법률 제13호 일부 개정되어 3월 29일 시행
주무관청 CBIC로 인도 통관제도의 기본 법령

관세 업무 담당 직책 및 세관 지정, 수출입 심사, 통관, 관세의 납부 및 환급과 더불어 관세 관련 분쟁 해결절차와 범죄 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1975년 제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법에 따른 세율이 과세됨



대외무역법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72년 제정
1992년 개정법령에 대한 일부 규정을 2010년에 추가 개정함
물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수출입무역거래에 관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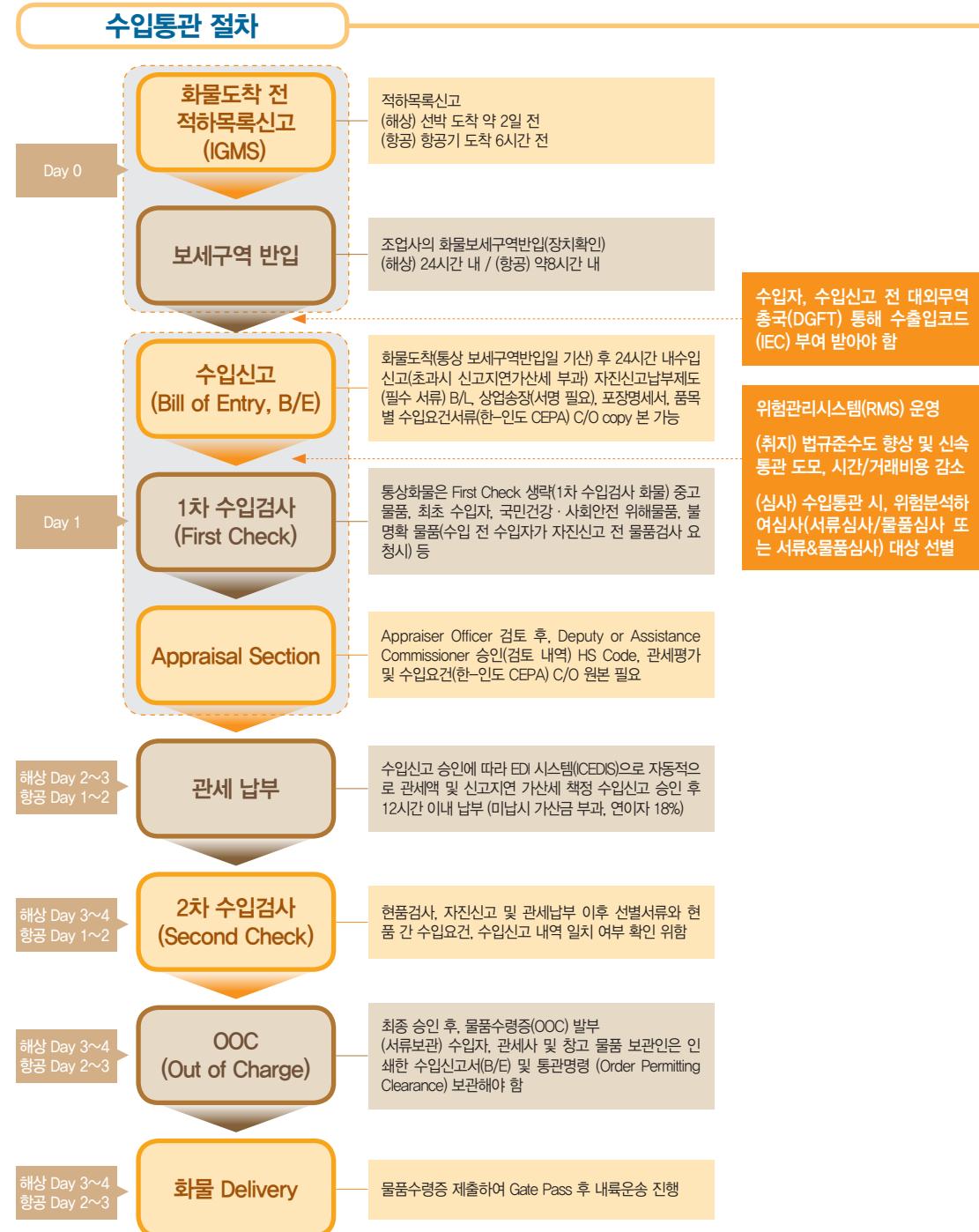


외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년 제정
외환거래, 외국투자, 역외 금융 차관, 수출대금 회수, 수입대금 지불 등에 관해 규정

자료 : 세계법제정보센터, 인도 관세법, 관세율법, 대외무역법 및 외환관리법 요약본 (2018) 재구성

인도의 수입 통관 절차⁽³⁾



자료 :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제공자료(2018), 세계법제정보센터, 인도 관세법 요약본 (2018) 재구성

수입신고

- 수입자는 스스로 자진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정확한 관세평가를 위한 수입신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과 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

수입검사

- 담당 세관직원은 자진신고 사항의 검증을 위해 물품 계약서 등 관련 문서 제출 요구하거나 물품 일부 검사 또는 시험목적 샘플 취득 가능
- 관세평가에 대한 자진신고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된 경우, 세관직원은 관세를 재평가(re-assess)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일 또는 운송증권상 수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재평가한 관세를 통지해야 함
- 세관직원의 편의에 따라 재평가 대상이 아닌 물품의 관세평가를 세관 또는 수입장의 작업장 (premises)에서 심사할 수 있음

과세물건의 확정

- 관세율 및 관세평가: 과세물건 확정시기⁴⁾에 시행 중인 관세율과 관세평가 방법 적용
- 관세환율: 수입신고서 제출일의 환율 적용

관세의 환급

- 수입자가 실제 납부할 관세보다 과다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한 관세 및 초과이자에 대한 환급을 경정 청구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⁵⁾

- 전산환경 낙후: ICES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전산환경이 낙후되어 전산장애로 24시간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못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인프라 부족: 공항 · 해상에서의 공간 부족, 배송 지연 및 화물손상 발생, 프린터 등 주변 기기 고장시 대응미비하여 신고서류 인쇄불가에 따른 공정중단 발생 등
- 세관직원 리스크: CFS 규모 대비 부족한 담당 세관직원으로 인해 세관직원이 여러 CFS 겸임하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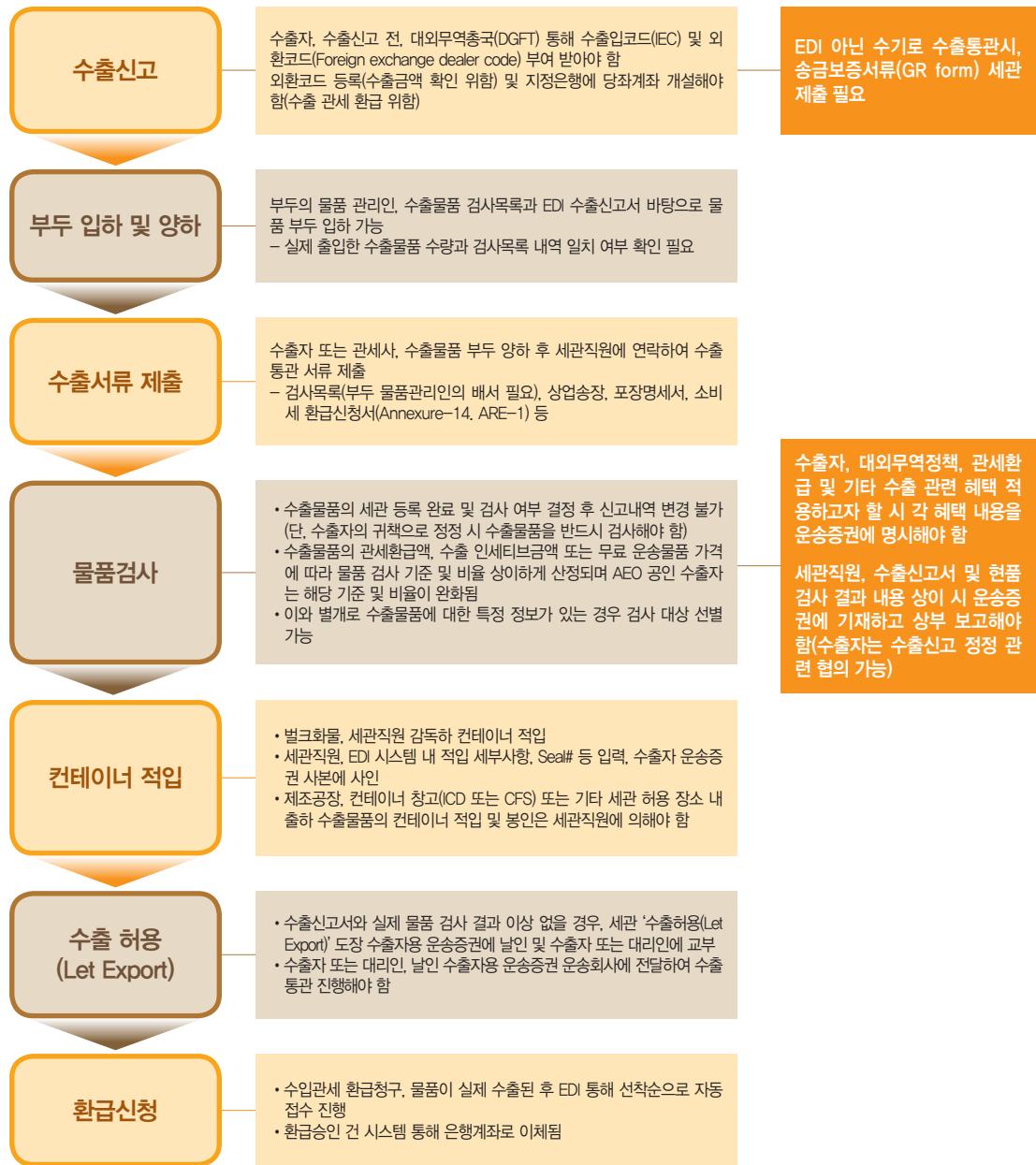
4)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다음 중 하나임

1. 국내소비를 위해 반입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날짜
2. 보세창고에서 통관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날짜
3. 기타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납부일
4.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일 전에 수입신고서가 미리 제출되었더라도 수입신고서는 해당 입항일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입항일

인도의 수출 통관 절차⁶⁾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자, 세관 또는 EDI 서비스 센터의 수출담당부서에 운송증권(Shipping Bill) 및 기타 관련 서류 제출

관세의 납부 또는 면제

-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Export tariff) 또는 수출세(Export cess)를 부과하거나, 최소수출가격 (Minimum Export Prices: MEP)을 적용하는 품목을 규정
- 세관직원은 부과 가능한 관세 및 기타 세금 평가하고, 관세 환급 또는 관세 면제 적용 대상은 환급 또는 면제 적용 타당성 점검

수출검사

- 선적 전 운송서류 상 수출물품의 검사 여부 표시됨
- 부두, 컨테이너 단지(CFS) 및 내륙연계수송기지(ICD)의 세관직원이 수출물품을 검사 가능
- 검사 결과 신고서와 물품간 일치하지 않거나 선적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 등의 이상이 없을 경우에 선적 허용됨

인도 특수관계가치평가원(SVB)⁷⁾



■ 인도의 모든 수입자 수입신고서(B/E) 상 수출자와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신고해야 함

- (정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이들의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담당기관) 세관기관 특수관계가치평가원(Special Valuation Branch: SVB)에서 조사(2007년 관세평가 규칙 2(2) '특수관계자')
- SVB 조사 범위 : ①관세의 과소평가 여부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이 부당하게 낮은지), ②소득 세 이전가격의 과대평가 여부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인도 자회사의 이익 과소계상 여부)

■ 관련자의 범위

- 수입자는 아래 관련자 범위를 파악하고 어떤 수입 거래가 SVB의 조사 대상이 되는지에 유의 할 필요가 있음

- 한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가 다른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인 경우
- 법적으로 인정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상호 소유, 지배, 보유하고 있는 관계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통의 제3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동일 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자료 :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インドSVBの概要と関連者からの輸入における留意点 (2019)

■ 한국 관세법 상 특수관계자는 아래와 같으며, 인도의 SVB 조사대상 관련자 범위와 상당히 유사함(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SVB 절차 및 관련자로부터의 수입 고려사항



관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수입평가액의 산출 방법

- 거래 가격은 인도에 수출을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한 실제 지불 총액에서 일반적으로 CIF(FOB+운송비용+보험료)을 거래 가격으로 고려
- 이하 표의 항목을 지불 총액에서 가산·감산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해 수입평가액 산출

가산	수수료 및 브로커 비용
	컨테이너 비용
	포장 비용 (재료비 및 인건비)
	재료, 도구, 염료, 금형, 소모품
	수입품에 따른 로열티, 라이선스 비용
	수입까지의 운송 비용
	판매 관련 기타 수당
	적재, 하역, 화물 취급 수수료
	보험료
감산	수입 후의 건설, 조립 비용
	인도의 세금 비용
	수입 후의 운송비용
	수입자로부터 수출자에게 수입품과 관계없는 배당 또는 기타 지불

자료 :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インドSVBの概要と関連者からの輸入における留意点 (2019)

- 거래 가격에 따라 수입 평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공제 가격 (Deductive value, 수입국에서의 판매 가격을 기반)과 산출가격 (Computed value, 생산국의 생산 비용과 마진을 기반)을 이용

절차

- 세관의 잠정평가, SVB의 조사, 재정 당국의 선임 등 절차 진행될수록 수입 평가액 타당성에 의문 제기해 경정명령 가능성 높아짐

수입자는 통관 시 수입신고서(B/E) 이외 설문 별표 A(Annex A)를 세관에 제출

세관 담당관은 별표 A에 대한 답변 검토 후, SVB에 추가 조사 의뢰 여부 결정을 위한 예비 평가를 세관 심의관에 제출

세관 심의관이 SVB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시, 수입자에게 참조 번호가 부여된 보증금의 부담과 수입 가격의 경정 없이 물품 통관

SVB 조사필요시,

- SVB 조사 지시
- 수입자에게 관련자료, 설문별표B(Annex B) 60일이내 제출요청
- 처음으로 수입화물 입항한 경우, 임시관세 지불채권(P.D. Bond), 법인세 등록증(PAN Card), 특수관계 질문서(SVB Questionnaire) 등 관련 서류 제출
- 송장 금액 1%를 가산한 임시관세(Extra Duty Deposit: EDD) 납부. 임시관세는 설문 별표B 60일 이내 제출시 환급됨

60일 이내 자료 제출 불가시, 수입자는 신고 수입평가액의 5 %의 보증금(현금 또는 은행보증) 지불하여 60일 연장 신청(임시관세, 서류 제출이후 최종 환급됨)

SVB의 추가질문/자료요청 및 조사보고서 작성 후, SVB 세관 심의관 승인 거쳐 조사보고서를 세관에 제출

보고서 내용	Show cause notice & Adjudicating autho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의 제출 정보 잠정 평가 수입평가액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이유 관련자에 의한 가격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일 SVB의 조사 보고서에 수입가격이 국외 관련자 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세관 담당관은 통지서>Show cause notice)를 수입자에게 발급 또한 재정당국(Adjudicating authority)을 선임하여 수입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수입가격 의 경정에 관한 명령을 발행

자료 :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インドSVBの概要と関連者からの輸入における留意点 (2019)

SVB 조사 대상

SVB 조사 면제	샘플 제품 및 견본 면세품 10만 루피 이하 수입(동일 연도 거래 합계액 250만 루피 초과시 제외)
SVB 조사 필수	수입자가 수출자에 로열티, 라이선스 비용 지불하거나, 수입품의 전매, 처분, 사용 관련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금액 관계없이 SVB 조사 필수

자료 :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インドSVBの概要と関連者からの輸入における留意点 (2019)

품목분류표상 제98류 활용



제98류 : Project Imports; Laboratory Chemicals; Passengers; Baggage; Personal importation's by Air or Post; Ship Stores of India Import Duty, Custom Duty, Tariff and Taxes.

- **인도는 통관 편의 목적상 '제98류'를 별도로 규정하여 수입 계획에 따라 수입된 물품, 우편 수입 물품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일괄 분류함**
 - 동 물품들은 다른 HS 코드(Code)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98류에 우선하여 분류됨
 - 수입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품목분류 가능하여 관세평가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행정 비용 절감에 기여함⁸⁾

2019년 인도의 제98류 관세율

HS Code	품목	단위	관세율	
			기본	특례
9801	수입계획에 따른 플랜트 및 프로젝트			
.0011	산업프로젝트 플랜트	kg	10%	—
.0012	용수로(irrigation) 플랜트	kg	10%	—
.0013	파워(power) 프로젝트	kg	10%	—
.0014	광산 프로젝트	kg	10%	—
.0015	석유 및 기타 광물 탐사 프로젝트	kg	10%	—
.0019	기타 프로젝트	kg	10%	—
.0020	플랜트 구성요소(완성품 여부 불문) 또는 원자재 ⁹⁾	kg	10%	—
.0030	예비 부품 또는 원자재 ¹⁰⁾	kg	10%	—
9802.0000	실험실용 화학용품	kg	10%	—
9803.0000	여행자 · 승무원 휴대품	kg	100%	—
9804	개인용 휴대품(우편 또는 항공수입)			
.1000	의약품(drugs and medicines)	kg	35%	—
.9000	기타	kg	35%	—
9805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상 상점의 물품			
.1000	보관 중인 육류, 생선, 채소; 유제품, 수프, 라드(lard); 신선한 과일	kg	10%	—
.9000	기타 소비재품(연료, 운활유, 알코올 음료 및 담배 제품 제외)	kg	10%	—

주 : 2019년 인도의 제98류 관세율 및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편(2017) 업데이트

자료 : 인도 관세 · 간접세 위원회 CHAPTER 98 (<http://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t1819-010219/Chap%2098.pdf>;jsessionid=0FB6358674FD7A91CB7E5FD6FCA1E39E)

9) 9801.0011~14 품목의 초기 설치 또는 실질적인 확장에 필요한 물품일 것

10) 9801.0011~14 품목의 유지 · 보수를 위한 반제품 또는 소모품 등을 포함함

제Ⅲ절
인도의 통관 절차

02

한-인도
CEPA 특혜적용 절차

한-인도 CEPA 특혜적용신청 개요



협정국	인도	발효일자	2010.01.01.
원산지 증명서발급	발급방법	기관발급	
	발급주체	인도 : 수출검사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섬유위원회	
	서식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유효기간	양국간 통일증명서식(KIN-CEPA양식)	
특혜적용 신청 (수입시)	신청시기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2.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 지위 증빙 서류 등) 3. 비당사국 경유 · 환적 운송시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이 나타나는 선하 증권 또는 운송장, 비당사국 세관통제하에(비가공 및 단순경유 · 환적을 입증하는 서류) 있었음을 입증하는 제출 서류	
	제출면제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금액제한 없음)	
원산지 검증	검증방법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검증주체	한국 : 세관, 인도 : 검증기관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 (직접검증)	
제3국 발행 송장	원산지증명서 14번 란에 체크 표시 및 송장 발행회사명, 주소와 국가명 기재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체약당사국 발급기관



- 특혜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분됨
- 한-인도 CEPA에서는 기관발급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약당사국인 인도와 한국 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음

인도 원산지물품의 발급기관

-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총 3곳으로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임

	국 명	영 문 명	CI
1	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2	섬유위원회	Textile Committee	
3	수산물수출개발원	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자료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Ministry of Textiles 및 수산물수출개발원 홈페이지 (검색일자: '19.08.12.)

대한민국 원산지물품의 발급기관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함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확인

1.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http://www.customs.go.kr/kcshome/>)



2. 패밀리사이트→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 선택



3. 원산지증명서 상세발급 정보 확인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한 신청자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를 말함



신청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리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작성법법 참조
------	-----	--------------

1.신청구분	신규발급 [] 재발급() [] 정정발급()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2.신청인	구분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 상호(대표자)	
3.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해당 [] (인증번호:)	
4.적용자유 무역 협정		
5.수출자	상호(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전자우편주소
6.생산자	상호(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전자우편주소
7.수입자	상호 주소(국가)	대표자 전화번호

8.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		본선인도가격(FOB USD)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 (HS No.)	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결합 기준	특정 공정	역외 가공		
/				[]	[]	[]	[]	[]	[]	[]	
/				[]	[]	[]	[]	[]	[]	[]	
9. 운송수단/선(편)명	선박 [] 항공기 [] 기타 [] /	10. 적재항(출항일)									
11. 목적국/항구	/	12. 포장종류부호/개수									
13. 총중량		14. 송품장 번호/발급일									
15. 원산지증명서 특례	제3국 송품장 [] 연결 원산지증명서 []	전 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210mm×297mm[백지지 80g/m²(제활용품)]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 처리기간 : 즉시

발행 번호 : 999999999999(YYYY.MM.DD)

10. **인구** 2010년 10월 1일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20개이다.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개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료 : 관세청 유니패스 (서식자료실) (검색일자: '19.06.28.)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COMMERCIAL INVOICE						
① Shipper/Seller		⑦ Invoice No. and date 8905 BK 1007 MAY. 20. 2007				
GILDING TRADING CO., LTD. 159, SAMSUNG-DONG, KANGNAM-KU, SEOUL, KOREA		⑧ L/C No. and date 55352 APR. 25. 2007				
② Consignee (or For account & risk of Messrs) MONARCH PRO CO., LTD. 5200 ANTHONY WAVUE DR. DETROIT, MICHIGAN 48203 U. S. A		⑨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MONARCH PRODUCTS CO., LTD. 5200 ANTHONY WAVUE DR. DETROIT, MICHIGAN 48203 U. S. A				
③ Departure date MAY. 20, 2007		⑩ Other references COUNTRY OF ORIGIN : REPUBLIC OF KOREA				
④ Vessel/flight PHEONIC		⑤ From BUSAN, KOREA		⑪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F.O.B BUSAN L/C AT SIGHT		
⑥ To DETROIT, U.S.A						
⑫ Shipping Marks	⑬ No.&kind of packages	⑭ Goods description		⑮ Quantity	⑯ Unit price	⑰ Amount
MON/T DETROIT LOT NO C/NO.1-53	420 DP X 420D MATERIAL. AS PER MONARCH PRODUCTS INDENT NO. T. 858 MADE IN KOREA	NYLON OXFORD		60,000M 1208.06KGS.	US\$1.00/M	US\$60,000
					Signed by ⑯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무역서식) (검색일자: '19.06.28.)

원산지(포괄)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할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 기준 총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Blanket period (YY/MM/DD ~ YY/MM/DD])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성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작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성일(Date) : 년 월 일 (YY/MM/DD)

210mm×297mm[백지지 80g/m²(자활용품)]

원산지소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월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이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수출자·생산자				
1. 수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2. 생산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제품명세				
3. 품명/규격			4. 품목번호(HS No.)	
6. 품가격	가격조건	금장도가격(EXW) []	6.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본선인도가격(FOB) []	7. 자유무역협정명칭	
8. 주요생산 증정				

월재 토명세사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원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8. 투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투가가치비율 : %)	
19. 결합기준	예 [] 아니오 []	20. 특정공정기준	예 [] 아니오 []
21. 억외가공기준	예 [] 아니오 []	22.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3.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4. 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5. 기타	예 [] 아니오 []	26.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예술
한국의 자연
한국의 음악
한국의 춤
한국의 전통
한국의 관습
한국의 종교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한국의 사회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예술
한국의 자연
한국의 음악
한국의 춤
한국의 전통
한국의 관습
한국의 종교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한국의 사회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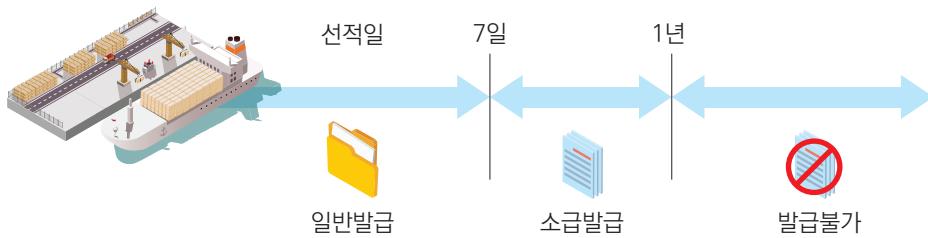
210mm × 297mm [별상지 80g/㎡ (전화용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일(근무일수) 이내에 발급됨

- 소급발급이란, 선적일 7일 후에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함



- 선적일 7일 이후(선적일 포함)부터 발행되는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제6란에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가 기재되어야 함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6. Remarks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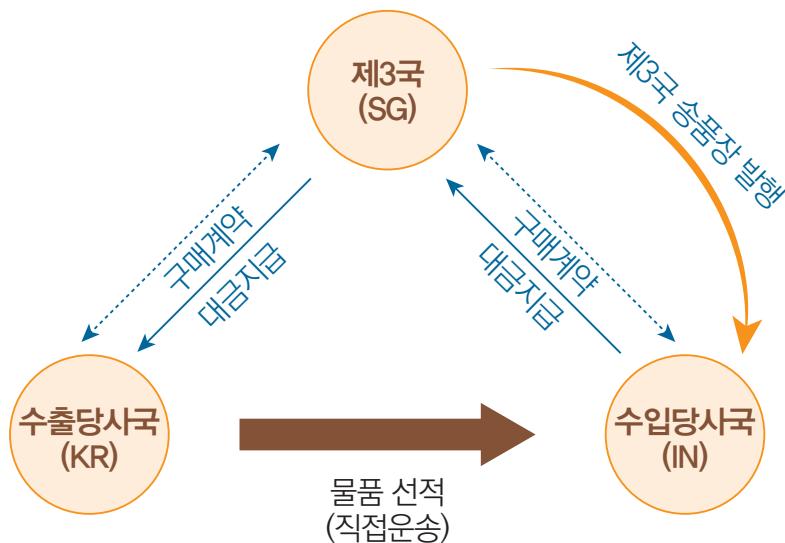
- 최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음

제3국 송품장 발행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 중계무역으로 제3국(비당사국)에서 송품장(Invoice)이 발급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적용을 인정

제3국 송품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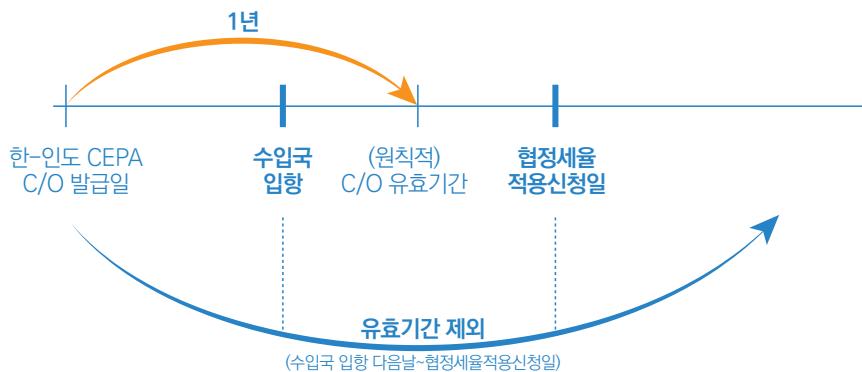
-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운송은 직접 당사국 간(한국-인도)에 이루어지나, 송품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운영인에 의하여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 해당 물품이 협정문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라면 관련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해 수리될 수 있음
- 다만 운송서류 내 생산자와 선적자는 모두 당사국 내 소재하고 원산지증명서 역시 당사국 내 소재한 자에 의해 발급되어야 함. 특히 원산지증명서 제14란 “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 후 송품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어야 함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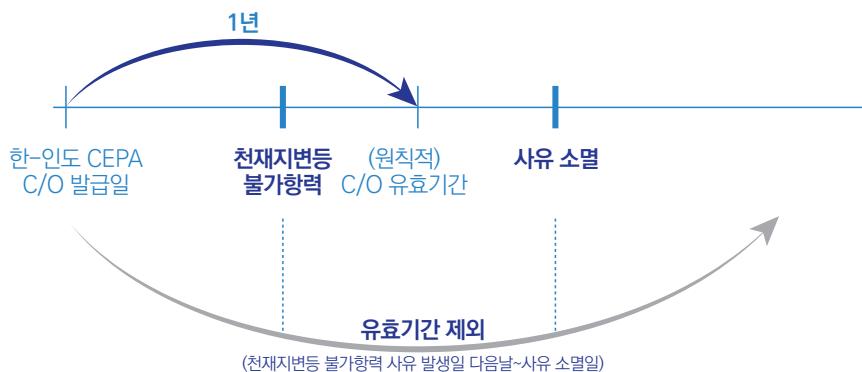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한-인도 CEPA 협정관세 적용신청



-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하 “사후적용”)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서류

한국	인도
1.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1.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B/E) 내 협정관세 적용함 명시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원본)
2. 원산지증빙서류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사본, 사후적용 시 원본) -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 지위 증빙 서류 등	2. 사후적용시, - 수입신고서 정정신고 - 환급신청서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사후적용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적용 신청시 한함) - 상기 1 및 2 서류 -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그러나, 인도 내 사후적용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 워 적용받기 어려움 * 품목에 따라 인도 관세당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자료 : 각국 관련 법령 및 인도 현지 물류업체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함

(사례) 사후 협정관세 적용 거절¹¹⁾

- (애로사항) 금속가공기계를 인도로 수출한 후,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인도 수입업체에 송부
 - 인도 수입업체에서 과거 인도 관세당국의 사후 협정관세 적용 거절 사례가 많은 것을 이유로 한-인도 CEPA 협정관세 사후적용 진행하지 않음
- (관련 법령)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이하 “사후적용”)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관련법령참조

1. 한-인도 CEPA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의 1 및 2
2. Sub-section (1) and (2A) of section 25 of the Customs Act, 1962

● (사후 협정관세 적용 거절)

- 인도 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수입신고 정정 및 환급신청서와 해당 협정 원산지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함
- 그러나 실무적으로 인도 관세당국에서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함

● (사안 종결)

- 인도 수입자는 인도 관세당국에 사후 협정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대신 수출대금에서 해당 관세납부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한국 수출업체에 통보

-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증명을 위해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다음 서류 제출 요구 가능

1. 통과선하증권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Shipper's Name and Address		Shipper's Account Number		Not negotiable Air Waybill Issued by		최종 실제 AWB 발행자 및 국가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nsignee's Account Number		Copies 1, 2 and 3 of this originals and have the same validity.							
It is agreed that the goods described herein are accept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except as noted for carriage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CONTRACT ON THE REVERSE HEREOF. THE SHIPPER'S ATTENTION IS DRAWN TO THE NOTICE CONCERNING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Shipper may increase such limitation of liability by declaring a higher value for carriage and paying a supplemental charge if required.											
Telephone :											
Issuing Carrier's Agent Name and City:		AWB (AIR B/L)		Information							
Agent's IATA Code		Account No.									
Airport of Departure(Addr. of First Carrier) and Request		실제 발행자 기재									
TO By First Carrier	Routing and Desination	to	by	to	by	Currency	CHDS Code	WTNL	Other	Declared Value for Carriage	Declared Value for Customs
						USD	USD	USD	USD		
Airport of Destination		From		Amount of Insurance		INSURANCE-If Carrier offers insurance, and such insurance is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on reverse hereof, indicate amount to be insured in figures in box marked amount of insurance.					
최초 출발항 (예) INCHEON Airport											
최종 도착항 (예) INDIA Mumbai											
No	PCP	lb	Commodity item No.	Weight	Rate Charge	Total	Nature and Quantity of Goods (incl Dimensions or Volume)				
Prepaid		Weight Charge	Collect	Other Charges		경유문구 선택 기재 (예) KOREA TO INDIA VIA SINGAPORE					
Valuation Charge											
Tax											
Total Other Charges Due Agent		Shipper certifies that the particulars on the face hereof are correct and that insofar as any part of the consignment contains dangerous goods, such part is properly described by name and is in proper condition for carriage by air according to the applicable Dangerous Goods Regulations.									
Total Other Charges Due Carrier											
Total Prepaid		Total Collect									
Currency Conversion Rate		CC Charges In Dest. Currency		Executed on (date) at (place) Signature of Issuing Carrier or its Agent							
For Carrier's Use Only at Destination		Charges at Destination		Total Collect Charges							
ORIGINAL 3(FOR SHIPPER)											

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무역서식) 일부 수정 (검색일자: '19.06.28.)

2.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환적된 경우, 비당사국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서류의 사본 (비조작증명서)

1. Name & Address of Shipping Agent/ Freight Forwarder <small>[Click here to insert details]</small>		 <p style="text-align: right;">Original</p> <p>SINGAPORE CUSTOMS 55 Newton Road #07-01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 : 6355 2000</p> <p style="text-align: center;">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p> <p style="text-align: center;">No.</p>																					
2. Details of Consignmen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Item(s) Description</td> <td colspan="3">Quantity/ Gross Weight</td> </tr> <tr> <td colspan="2">[Click here to insert details]</td> <td colspan="2">[Click here to insert details]</td> </tr> <tr> <td>Country of Origin of Goods</td> <td colspan="2">[Click here to insert details]</td> <td>Outward Bill of Lading No./ Air Waybill No.</td> </tr> <tr> <td>Date of Discharge in Singapore</td> <td colspan="2">[Please select date]</td> <td>Date of Departure from Singapore</td> </tr> <tr> <td>Country of Final Destination</td> <td colspan="2">[Click here to insert details]</td> <td>Outgoing Vessel/ Vehicle/ Flight No.</td> </tr> </table>				Item(s) Description	Quantity/ Gross Weight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Country of Origin of Goods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Outward Bill of Lading No./ Air Waybill No.	Date of Discharge in Singapore	[Please select date]		Date of Departure from Singapor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Outgoing Vessel/ Vehicle/ Flight No.
Item(s) Description	Quantity/ Gross Weight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Country of Origin of Goods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Outward Bill of Lading No./ Air Waybill No.																				
Date of Discharge in Singapore	[Please select date]		Date of Departure from Singapor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Outgoing Vessel/ Vehicle/ Flight No.																				
3. Declaration by Shipping Agent/Freight Forwarder <p>I/We undertake that</p> <p>a) the goods indicated, when transhipped via Singapore, will not undergo operations beyond the 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ensuring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 for the purpose of transport or storage; ii. facilitating shipment or transportation; and iii. packaging or presenting goods for sale. <p>b)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correct.</p> <p>Name: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Designation: [Click here to insert details] Date: [Please select date]</p> <p><i>(This is an electronically submitted declaration. No signature is required.)</i></p>																							
4. Certification by Singapore Customs <p>We certify tha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declaration by the shipping agent/ freight forwarder is true and correct.</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without any prejudice or liability whatsoever on our part arising from any circumstances.</p> <p>Authorised Signature: Name: Designation: Date: (stamp)</p>																							

자료 : 싱가포르 세관 비조작증명서 (싱가포르 세관 사이트) (검색일자: '19.06.28.)

한-인도 CEPA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 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함

1. 수입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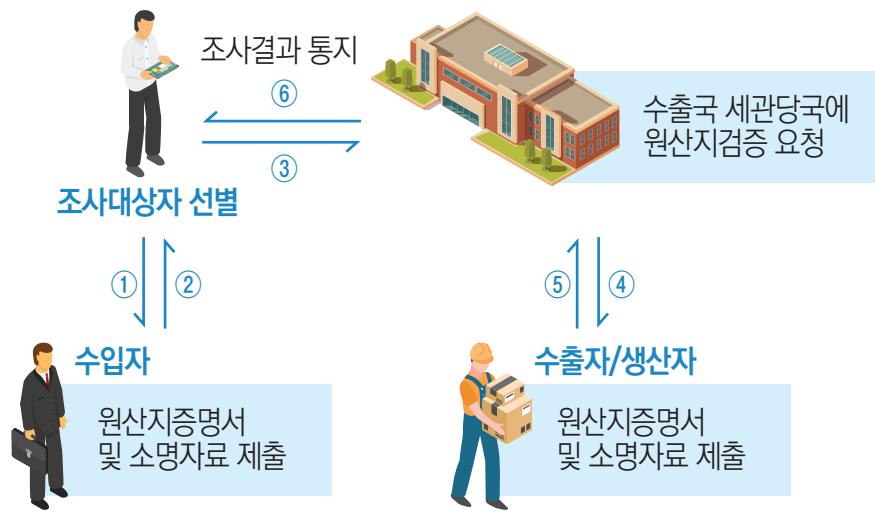
대상 구분	보관서류
수입자	<p>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p> <p>나. 수입신고필증</p> <p>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p> <p>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p> <p>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p> <p>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p> <p>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대상 구분	보관서류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 · 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상기 수출자 보관 서류 중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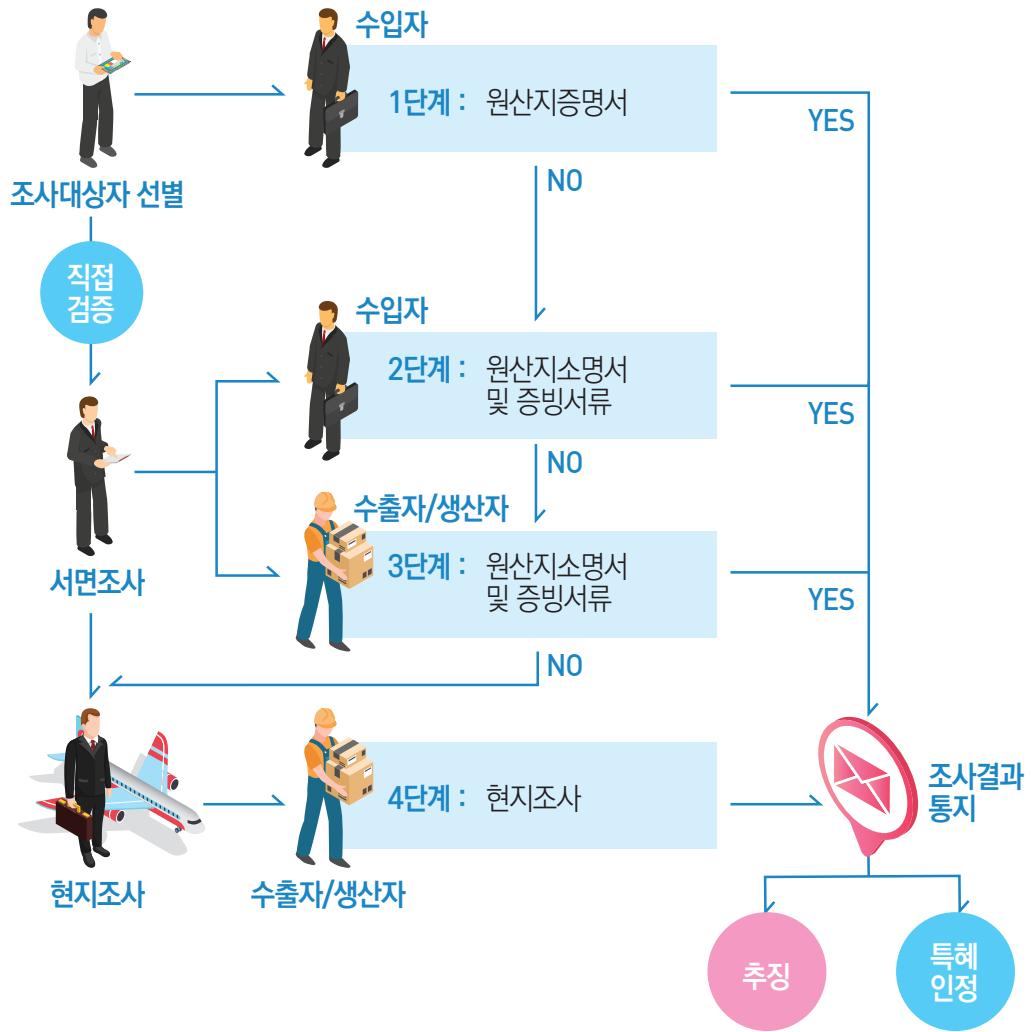
원산지조사(검증) 방식

- 한–인도 CEPA는 먼저 간접검증 후, 간접검증에 따라 원산지 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직접검증 진행
- 원산지조사(검증)는 검증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됨
- 간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것
- 이 때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음



- 수입국 관세당국은 조사대상자를 선별
- 수입국 관세당국은 선별한 조사대상자(수입자)에 대하여 조사통보 후, 조사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자료 제출함
- 수입국 관세당국은 제출 받은 소명자료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함
- 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검증 수행)
- 수출자/생산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응함으로서 검증에 임함
- 수출국 관세당국은 조사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

- 직접검증: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



1. 수입국 관세당국은 조사대상자를 선별
2. 수입국 관세당국은 먼저 수입자를 서면조사함
3.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원산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함
4.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현지조사를 통보하고,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
5.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조사 결과를 수입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함

한-인도 CEPA 인증수출자 혜택



인증수출자란?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신청협정 · 품목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인증수출자 혜택은?

- 한-인도 CEPA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인증 전	인증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첨부서류 제출<ol style="list-style-type: none">수출신고필증 사본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현지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첨부서류 제출 생략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인도 CEPA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¹²⁾



- 한-인도 CEPA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인도 CEPA협정 제5.8조 사전심사

1.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 영역 내의 수입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전, 다음사항에 관한 사전심사 결정서의 신속한 발급을 규정하도록 노력한다.

- 가. 상품의 품목분류
- 나. 상품의 가격 산정을 목적으로 채택된 원칙
- 다. 상품의 원산지 결정, 또는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 인도 사전심사 제도 구분

- 1) 세관(Custom) 사전심사(상품수출입 관련 사전심사제도)
- 2) 물품세(Central Excise) 사전심사 제도
- 3) 서비스세(Services) 사전심사 제도

104

■ 인도 사전심사제도 신청 및 절차

- 신청서 4부를 작성하여 10,000루피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
- 일반적으로 인도 내 거주하는 대리인 업체를 통해 신청, 관세법상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자도 신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활용사례

- 관세법상 처리 기한은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이며, 인도는 지역마다 품목분류를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할지역에서 사전심사 진행을 해야함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수입시 활용)

- 우리나라는 관세법 및 FTA특례법상 다음과 같은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 : 물품 가격의 사전심사
-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 HS 품목번호의 사전심사
- 원산지 사전심사 : 물품 원산지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 사전심사제도 비교

구 분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원산지
대 상	수입물품	수출입물품	수입물품
목 적	제1방법 가산요소, 제1방법 배제요건, 특수관계자 여부 사전확인 등	품목분류의 사전확인	원산지 충족여부 사전확인
통보기간	1개월 또는 1년	30일	60일
재심사 여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유효기간	3년	3년	-

03

인도의
주요 인증 제도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¹³⁾



■ 인도 내 규제 및 표준 관련한 기관, 기구 및 적합성 평가는 아래와 같음

- 규제수립기관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서 규제 수립
- 표준화기구 : 인도표준국(BIS), 중앙의약품표준규제기관(CDCO)
- 적합성평가 : 인도 품질관리위원회(QCI), 인증기관국가인정위원회(NABC) 등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시스템



자료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TBT와 SPS :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 개요

- 수출 상대국의 복잡한 인증제도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따라서 인도 주요 인증기관의 품목 · 산업별 인증제도 현황 및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 인도의 주요 인증기관 및 제도

- 인도 내 인증제도는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 관할 정부부처 및 인증담당기관이 세분화 되어 있음

■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인도표준국(BIS), 중앙약물표준관리기관(CDSCO), 식품안전기준청(FSSAI) 등이 존재함

- 인도표준국(BIS) : ISI(시멘트, 가정용 전기제품 등) 및 CRS(전자제품 및 IT 제품) 등
- 중앙약물표준관리기관(CDSCO) :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식품안전기준청(FSSAI) : 식품 관련 품목
- 기타



자료 : 각 기관별 홈페이지

■ 통상적으로 한 개의 품목에 대해 한 개의 인증만을 요구하나, 일부 품목은 두 개 이상의 인증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함으로 각 품목별 인증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함

인도표준국(BIS)¹⁵⁾



-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이하 BIS)은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 1947년 세워진 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이하 ISI)에서 개칭되었으며, ISI 마크 및 강제인증(CRS) 제도 등을 운영
- ISI 마크 및 강제인증(CRS)에 해당하는 대상 품목은 해당 인증을 받아야만 인도 내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함
 - 인도표준국의 인증제도는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제품 사양 역시 인도표준국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함

종류	주요 내용	
 Bureau of Indian Standards The National Standards Body of India	명칭	Bureau of Indian Standards
	홈페이지	https://bis.gov.in/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ISI 마크 및 CRS(강제인증) 인증제도 운영기관임

자료: BIS 홈페이지(<https://www.crsbis.in/BIS/index.do>) (검색일자: '19.08.07.)

■ ISI 마크

- 현재 ISI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는 품목은 크게 15개 품목군(시멘트, 가정용 전기제품, 배터리, 식품 관련 제품, 유압스토브 등)에 따라 총 155개 물품이 존재함

※ 세부물품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bis.gov.in/?page_id=1697

■ ISI 대상 품목군

제품 분류	
국문	영문
시멘트	• Cement
가정용 전기제품	• Household Electrical Goods
배터리	• Batteries
식품 관련 제품	• Food and related products
유압스토브	• Oil pressure stoves
자동차 부속품	• Automobile accessories
실린더 · 밸브	• Cylinders, Valves and Regulators
의료장비	• Medical Equipment
철강제품	• Steel Products
전기변압기	• Electrical Transformers
전기모터	• Electrical Motors
커패시터	• Capacitors
화학 · 비료	• Chemicals & Fertilizers
주방가전	• Kitchen Appliances
LPG온수기	• Domestic Water Heaters for use with LPG

주 : 상기 ISI 대상 품목군은 참고용이며, 전체 적용대상 품목은 인도표준국 홈페이지 내용 확인

자료 : https://bis.gov.in/?page_id=1697

■ 강제인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CRS)

- 강제인증제도는 50여개의 전자제품 및 IT제품에 대해 인도 전자정보통신기술부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인증(등록) 제도임

종류	주요 내용	
강제인증제도 (C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강제인증제도는 전자 및 IT 제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인증제도 <p>☞ 강제인증(CRS)에 해당하는 품목은 BIS로부터 인증(등록)을 받아야 인도 내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반드시 인증(등록)을 해야함</p>	 <p>BIS 인증 마크</p>
대상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대상 품목으로 비디오게임, 노트북, 전자레인지, 휴대폰 등이 있고, 상세 대상 품목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 참고 <p>※ 물품 리스트 https://www.crsbis.in/BIS/products.do</p>	
인증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S 인증과 관련 하여 제품에 대한 테스트는 BIS 지정한 연구소에서 받아야 하며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의 따라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연구소가 각각 상이하므로 BIS 홈페이지에 확인필요 <p>※ 제품별(인증별) 연구소 리스트 http://crsbis.in/BIS/lablist.do</p>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도 내에 지사나 연락 가능한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없을시 인도 내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AIR)]을 지정해야 함 <p>(※ 외국인이 단독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p>	
등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절차와 관련해서는 BIS CRS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매뉴얼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 홈페이지) https://bis.gov.in/ ☞ (BIS CRS 홈페이지) https://www.crsbis.in/BIS/ • BIS CRS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통해 등록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인증제도 매뉴얼 https://www.crsbis.in/BIS/app_srv/tdc/gl/docs/brochure.pdf 	

자료: BIS 홈페이지(<https://www.crsbis.in/BIS/index.do>) (검색일자: '19.08.07.)

중앙약물표준관리기관(CDSCO)¹⁶⁾



- 인도 중앙약물표준관리기관(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은 인도 내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규정과 인증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 산하기관임
- CDSCO는 의약품 및 화학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에 근거하여 의약품 승인, 임상 시험 실시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
- 또한 의약품 표준 제정, 수입 의약품의 품질 관리 및 통제역할을 함

■ CDSCO 적용 대상 품목: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구분	주요 내용
명칭	중앙약물표준관리기관
주요업무	인도 내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규정과 등록 제도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임
적용대상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CDSCO CI	

자료: CDSCO 홈페이지(<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Home/>) (검색일자: '19.08.07.)

중앙약물표준관리기관(CDSCO) 등록대상 1. 화장품¹⁷⁾



구분		주요 내용
1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1940년 의약품 및 화장품 법률과 규칙(Drugs and Cosmetics Act, 1940)에 따라 화장품 제조는 각 주 정부가 지정한 주 허가기관에서 검사 및 허가 시스템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반면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정한 허가기관(CDSCO)에서 규제되고 있음온라인 신청 : https://cdscoonline.gov.in/CDSCO/homepage
2	주요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Drugs and Cosmetics Act, 1940Drugs and Cosmetic Rules, 1945
3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커버레터(Covering Letter)위임장(Power of Attorney)Schedule D (III)성분목록(List of Ingredients)제품의 라벨(Labels of proposed products)제품 상세정보(Specifications)Pack insert제조 허가증(Manufacturing Licenses)자유판매 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Non Animal Testing Declaration)중금속 및 헥사클로로펜 함량신고서(Declaration for Heavy Metal and Hexachlorophene content)기타서류[Other documents (If any)]신청서(Application (Form-42))수수료[Fee: TR-6 Challan (In Original)] <p>※ 자료제출 리스트 : https://cdsco.gov.in/opencms/export/sites/CDSCO_WEB/Pdf-documents/cosmetics/Documents_required_for_registration.pdf</p>
4	주의사항	<p>최근 화장품 관련 규정에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함으로 반드시 CDSCO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해야함¹⁸⁾</p> <p>※ 홈페이지 :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Home/</p>

18)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인증등록 및 승인과 관련해 규제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개정사항 등이 발생하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

중앙약물표준관리기관(CDSCO) 등록대상 2. 의약품¹⁹⁾



구분	주요 내용
1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CDSCO의 주요기능으로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규제, 신약 및 임상시험 승인, DCC(Drugs Council Committee), DTAB(Drugs Technical Advisory Board) 회의를 주재함
2 의약품 주요 규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의약품 주요 규제기관으로는 CDSCO(headquarters) 산하기관인 의약품 감독기관(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 DCGI) 및 인도 각 주별 주정부 의약품 규제당국(State Drug Regulatory Authorities: SDRAs) 존재함 DCGI는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관련 법규와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고, 신약 시판, 임상 연구 및 수입의약품 등 각종 신규 의약품 대한 규제 등을 이행함 SDRAs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시설과 의약품 실험실 등 의약품 관련 시설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행하여, 각 관할 주 내에 제조 및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관리 · 감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Central Gov) 중앙 의약품 표준 규제 기관 (CDSCO) 인도 의약품 감독 기관 (DCGI) 조인트 의약품 감독 기관 (JDCI) 지원 의약품 감독 기관 (ADCI) 의약품 감사원 (DI) <p>※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의약품 규제기관(DCD 등)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주의 필요</p>
3 주의사항	<p>최근 의약품 관련 인증사항에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함으로 반드시 홈페이지 관련사항을 확인해야함</p> <p>※ 홈페이지 :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Home/</p>

중앙약물표준관리기관(CDSCO) 등록대상 3. 의료기기²⁰⁾



구분		주요 내용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 수입업체는 사전에 CDSCO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 자체의 용도, 수입목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sugam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청시를 기준</p>		
		구분	구분 코드	양식 코드
		수입 허가	MD-15	MD-14
		시험, 평가, 임상 연구 등을 위한 시험의료기기 수입 면허	MD-17	MD-16
		정부 병원 또는 법규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를 위해 소량의 임상 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시	MD-18	-
		의료기기 임상연구 허가	MD-22	-
		신규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진료수행 허가	MD-25	MD-24
		신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수입 또는 제조 허가	MD-29	MD-28
2	허가(면허) 신청 및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자, 수입자 또는 에이전트 		
3	신청시 필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정보, 제품 정보 및 제품 보유 인증, 적합성 평가, GMP 등 		
4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의 용도를 포함한 사용설명서, 인도 내 에이전트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자가 시험서, 제품 관련 상세 정보(각 구조별 재질, 사용용도, 포장 샘플 등), 원산지 지위, 해당 의료기기 관련 인증 성적서 등 		
5	주요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Drugs and Cosmetic Rules, 1945 		

식품안전기준청(FSSAI)²¹⁾



구분	주요 내용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FSSAI(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는 2006년 식품 안전 및 표준(Food Safety and Standards , 2006)에 따라 설립됨
2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품(Food product),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s), 영양제(Nutraceuticals) 및 Novel Foods 등 <p>※ 대상품목 및 관련규정은 홈페이지 참고 https://fssai.gov.in/cms/product-standards.php</p>
3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품에 대한 제조, 보관, 유통, 판매 및 수입 등 관련 업무 담당
4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FOOD SAFETY AND STANDARDS RULE, 2011
5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든 식품에 대한 라벨링 방식이 개정되어 2013년 이후 스티커 방식을 금지하고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도록 함
6 FSSAI CI	

자료 :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Version-II (2019))

■ 2015년 인도 네슬레사가 제조한 'Maggi' 라면 내 규정치보다 높은 납과 MSG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한 2016년 인도 新식품안 전법 발효²²⁾

-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 내용 개정안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Import) Regulation, 2016)

- 식품 수입자에 대한 DGFT(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등록 의무화
- 각 품목별 식품 수입 라이센스(FSSAI Central License)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함
- 수입 통관 시점에 수입 식품의 유통기한이 최소한 60%가 남아있어야 함
- 식품 수입 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을 수입자가 수입 통관을 진행할 경우, 식품 수입 라이센스와 수출입자 코드(IEC)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게 벌칙 규정 제정
- 식품 수입자는 식품 수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한 관세사를 지정해야 함 (Customs House Agent: CHA). 지정된 관세사(CHA)와 수입자는 식품 수입 관련 위반 내역에 대하여 같이 책임을 부담함
- 2개 이상의 식품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재시, 식품 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을 용이하게끔 각 식품 포장을 해야 함

자료 : GAIN report, 2016 Food Import Regulations (2016)

■ 수입식품의 샘플 검사 및 FSSAI 인증은 PHO(Port Health Office, 항만보건소)에서 진행하여야 함. 최대 1개월까지 검사기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식품 수입 규정의 개정에 따른 비관세무역장벽

- 식품 수입 규정이 개정되면서 복잡해졌으며, 식품 라벨링(Labelling) 방식이 최대 애로사항임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시행(2013)

기준	개정
•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제품 정보 표시 가능	• 스티커 부착 방식이 금지되었고, 직접 포장지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 라벨링 방식이 포장지 인쇄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표시 사항이 기재된 포장지 제작비용이 증가하거나 소량 주문 식품에 대한 포장지 제작이 어려운 점 등 한국 식품 수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조미 김(MSG 표기)에 대한 규제 사례²³⁾

- 대부분의 한국산 조미김에 MSG가 첨가되어있어, 인도 내 수입통관시 MSG 함유량 검사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 MSG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에 'MSG Free'를 표기하였더라도 MSG 함유량을 조사해야 함
- 더불어 조미김에 식용 식물성 오일 및 지방을 바르는 경우, 사용한 오일 및 지방을 '식용 식물성 오일, 식용 식물성 지방 혹은 경화유'로 기재하도록 표기명을 특정하여 지정함. 해당 특정 표기명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식품관련 마크(AG 마크, 채식·비채식 마크)



AG mark – 농산물²⁴⁾

구분	주요 내용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에 대해 일정품질을 인정 받으면 AG 마크를 부여 품질검사는 마케팅 검사국(DMI : Directorate of Marketing and Inspection) 규정에 따라 실시됨
2 대상품목	• 과일, 야채, 식물성 기름, 꿀 등 총 224개 제품
3 인증 기관	• 마케팅검사국(Directorate of Marketing and Inspection, DMI)
4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AG mark 인증 신청 절차는 마케팅 검사국 홈페이지 가능함 <p>※ 홈페이지 https://agmarkonline.dmi.gov.in/DMI/pages/home?&type=page&page=3</p>



채식 · 비채식 마크

구분		주요 내용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도는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안전표준규정에 근거하여 채식 및 비채식을 구분하는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함(채식은 녹색, 비채식은 갈색)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표준규정(포장 및 라벨링 표시(PACKAGING AND LABELLING))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채식	비채식
2	인증 마크		

자료 :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 및 Gain Report, INDI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Report(2019)

기타[TEC(유무선통신)]²⁵⁾



구분	주요 내용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도의 경우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해당기기는 인도정보통신공학센터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해당 품목(통신기기)들은 라벨을 부착해야함
2 주요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GSM Phones, 3G Modems, 블루투스 기기(Bluetooth) 등
3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Indian Telegraph Rules 1951
4 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 ※홈페이지 : http://www.tec.gov.in/certificate-of-approval/
5 시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TEC와 업무협약을 맺은 지정 시험소인도 정부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
6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청양식, 제품매뉴얼, 시험 성적서, 제품사진 등

특정무역현안(STC)



STC 개요

-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자국의 수출에 교역대상국의 신규 또는 시행 중인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절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 이라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여, 수출기업을 위한 TBT 대응체계를 설립

해외기술규제 대응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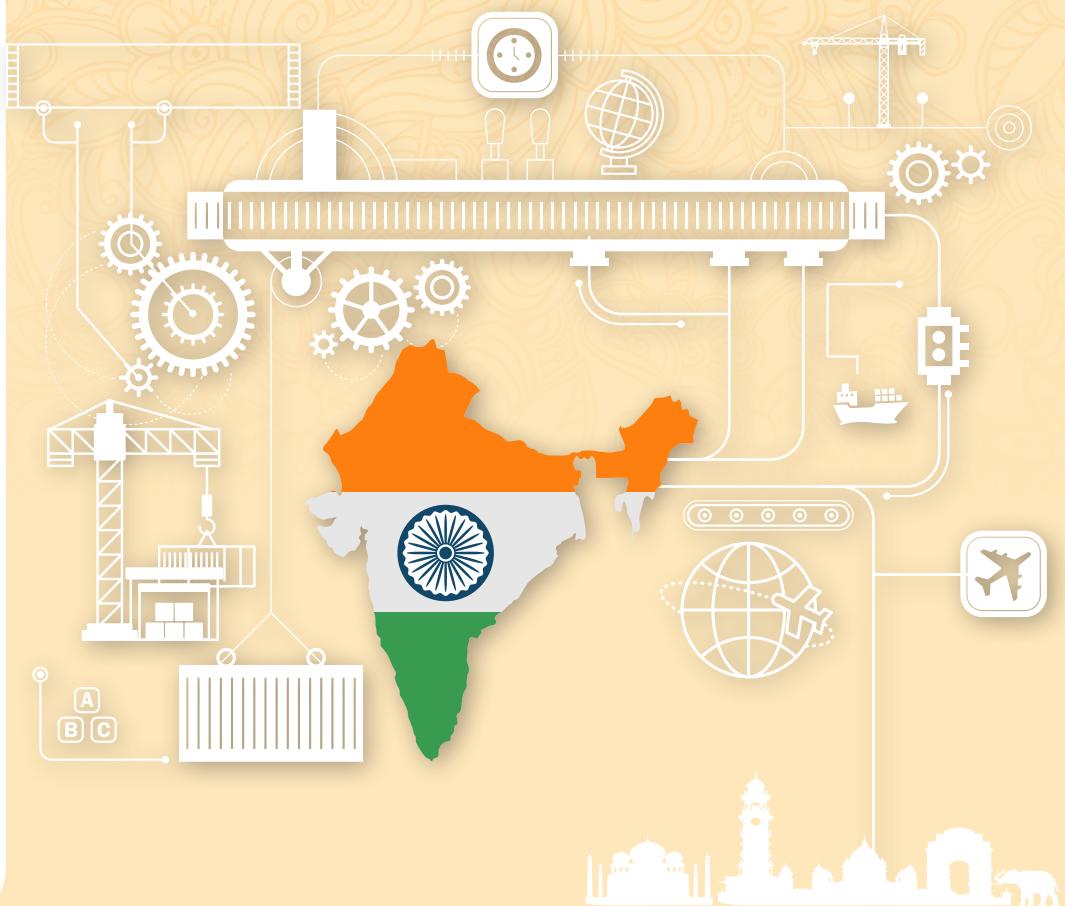
1단계 정보수집	2단계 조사분석	3단계 전략수립	4단계 대응
WTO TBT 통보 FTA TBT 통보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기업(해외지사)	일반분석: WTO TBT 통보문 번역, 규제 주제내용 요약 관련 산업별 분류 → TBT 포털 게시 및 업계 전파	대응전략 수립: 규제국가별 · 업종별 · 규제유형별 대응전략	외교적 대응: WTO TBT 위원회 활동, FTA TBT 위원회, 양 · 다자협의
	심층분석: 국내외 규제와의 비교분석, 예상 피해업계 파악, 규제 극복시 경제효과 규제활용 가능성 분석 → 중요 규제 선별 후 대응 전략 수립	업계 의견 수렴: 규제 피해 규모, 업계 대응 요청사항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MRA, MOU 등, 개도국 기술 · 시스템 전수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2017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7)

관련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	이메일	담당분야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043-870-5525~26	tbt@korea.kr	TBT대응 총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http://www.ktl.re.kr/	02-860-1320	tbt@ktl.re.kr	중국기술규제 종합지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http://www.gokea.org/	02-6388-6184	knowtbt@gokea.org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에너지, 식·의약품(의료기기), 기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http://www.kscia.or.kr/	02-2088-7254	yjsung@kscia.or.kr	화학세라믹, 바이오환경, 생활용품, 식·의약품(화장품, 의약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http://www.kocema.org/	070-8661-0816	terra67@kocema.org	기계, 건설, 소재나노, 교통안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www.ktr.or.kr	02-2164-0032	khjung21@ktr.or.kr	기술규제 분석, 산업계 TBT 애로 대응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ttp://www.kcl.re.kr/	02-3415-8754	sophiari@kcl.re.kr	기술규제 분석, 산업계 TBT 애로 대응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http://www.ktc.re.kr	031-428-8455	jchong@ktc.re.kr	기술규제 분석, 산업계 TBT 애로 대응 지원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남방국

인도편 India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V

인도 통상정책

-
1. 최근 인도의 통상정책 동향
 2. 인도의 무역구제조치
 3. 한-인도 CEPA에서의 무역구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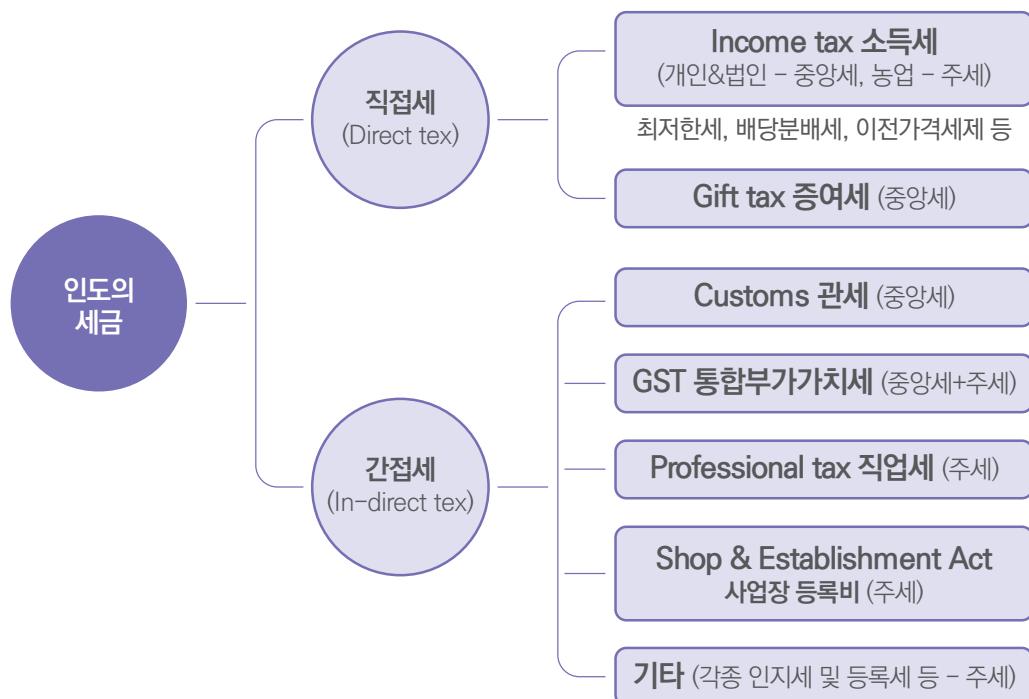
최근 인도의 통상정책 동향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시행

인도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인도통합부가가치세(GST) 시행

- GST의 시행은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으로 평가
 - 그간 인도의 복잡한 조세체계는 기업 활동의 장애요소로 제기됨
 - 지금까지 연방정부(소비세, 서비스세, 수입부가가치세) 그리고 주 정부(주내 거래에 대한 VAT, 진입세, 사치세 등)에서 각각 별개로 부과하던 간접세들을 단일세제로 총괄하여 합침^[26]
- ※ 단 모든 거래와 기존 주정부의 세제들이 GST로 통합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필요

인도의 조세체계



자료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 KOTRA,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2017)

Dual GST 체계²⁷⁾

- 인도 GST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과세하는 Dual GST 체계
- 따라서 주내 거래에는 CGST(Central GST), SGST(State GST)가 동시에 적용되며,
- 수입이나 주간 거래에는 CGST와 SGST를 통합한 IGST(Intergrated GST)가 적용

인도 GST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과거 간접세 항목	GST
재화 Goods	수입거래	기본 관세(BCD : Basic Customs Duty) 및 Customs Cess	BCD 및 Customs Cess
		추가 관세(CVD)	IGST (CGST + SGST) (우리 나라 수입부가가치세에 대응)
		특별 추가 관세(SAD)	
	주간거래	진입세(Octroi, Entry Tax)	IGST (CGST + SGST)
		연방소비세(Excise Tax)	
		연방판매세(CST)	
	주내거래	연방소비세(Excise Tax)	CGST / SGST
		부가가치세(VAT)	
서비스 Service	수입	서비스세(Service Tex)	IGST (CGST + SGST)
	주간	서비스세(Service Tex)	
	주내	서비스세(Service Tex)	CGST / SGST

자료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 KOTRA,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2017)

인도통합부가가치세(GST)의 구분

- GST는 품목군에 따라 세율*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비교적 세율이 낮고, 사치제 · 내구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함
 - * 인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함
☞ 홈페이지: www.cbic.gov.in/index
- GST 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세율 분류는 다음과 같음

세율	품목
면세 (Nil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선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버터, 두부 신선한 과일과 야채, 밀가루, 소금 등
5% (Lower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림, 분유, 냉동 야채, 커피, 차, 향신료 피자 빵, 등유, 석탄, 의약품
12% (Standard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된 냉동 육류 제품, 소시지, 과일 주스 치약, 그림책, 버터, 치즈, 휴대폰 등
18% (Standard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제된 설탕, 파스타, 케이크, 보존된 야채 잼, 철강 제품,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18%에 포함
28% (Higher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껌, 초콜릿, 코코아, 페인트, 헤어 샴푸, 벽지 온수기, 식기 세척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담배,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등

주 : 예를 들어 1) 18%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주내에 공급하는 경우 S-GST 9%, C-GST 9%로 나누어서 징수하고 주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I-GST 18% 징수

2) 28%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 일부(자동차, 담배)는 목적세(cess)가 가산되며, 그렇게 징수된 목적세는 GST 시행으로 세금이 줄어든 주정부의 재정보전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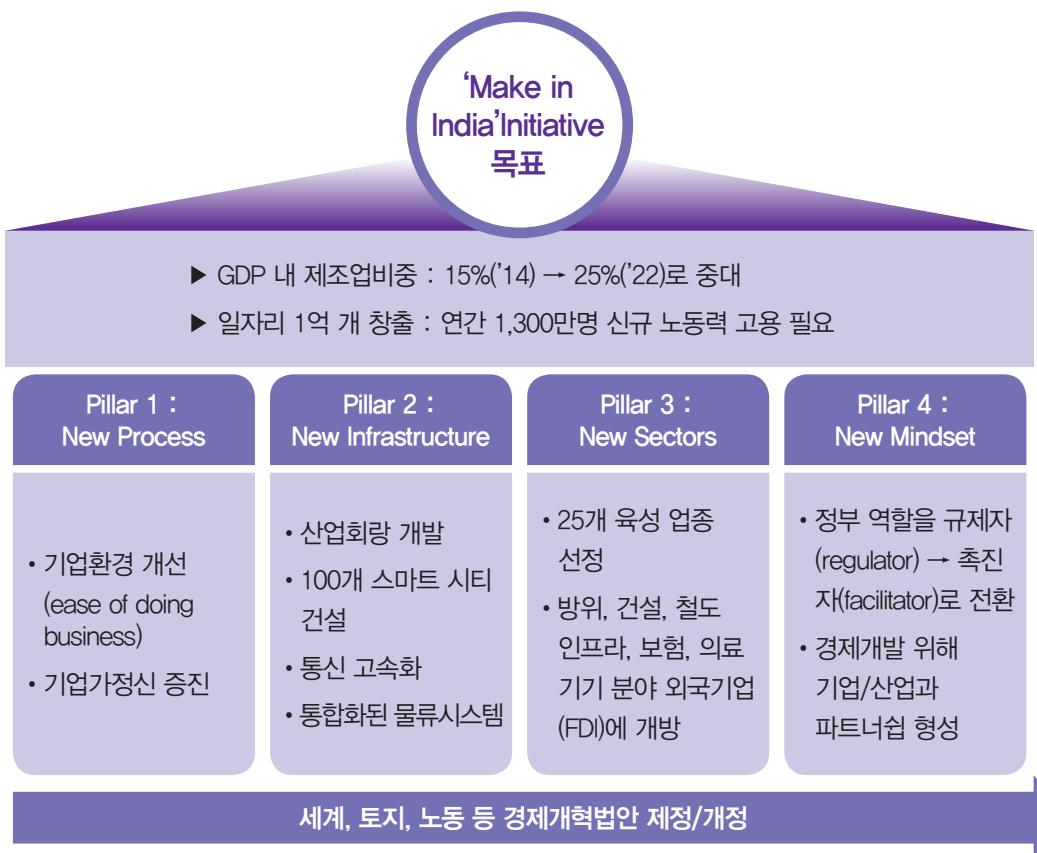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2017)

GST의 시행 효과

- GST는 간접세 자체의 변화(세목, 세율, 적용방법 등) 외에도 주간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물류의 흐름 개선, 사업 편의성 증진(Ease of Doing Business), 투자 확대 용이성 등 개선 기대

인도 통상정책, 「Make in India」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예상

- 2019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2015년부터 인도 정부가 시행해온 「Make in India」 중심으로 각종 정책의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측됨
 - Make in India 정책은 인도를 전 세계의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조업 육성 정책임
 - 인도정부는 제조업 진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측됨
 - Make in India 정책 목표 및 구성은 다음과 같음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원, 인도 「Make in India」 정책 성과가 2019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2019)

인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정책



■ 2019년 전자상거래 규제 정책(New FDI e-commerce) 시행

-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해외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²⁸⁾
- 그러나 2019년 2월²⁹⁾부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수정안(New FDI e-commerce)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인도해외직접투자 수정안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해당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판매자와 독점적 마케팅 계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품 가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음
- 매출의 25% 이상을 단일 이커머스 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음
- 판매 재고가 없는 구매자-판매자 연결 플랫폼 형태만 100% FDI를 허용
- 100% 인도제품을 판매하는 인도회사의 플랫폼만 판매재고 형태를 허용

자료 : 유진투자증권, Amazon, Walmart의 주가하락 배경이 된 인도 전자 상거래 규제점검 (2019)

인도 전자상거래 주요정책 및 현황



■ 인도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및 스킬 인디아(Skill India)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정책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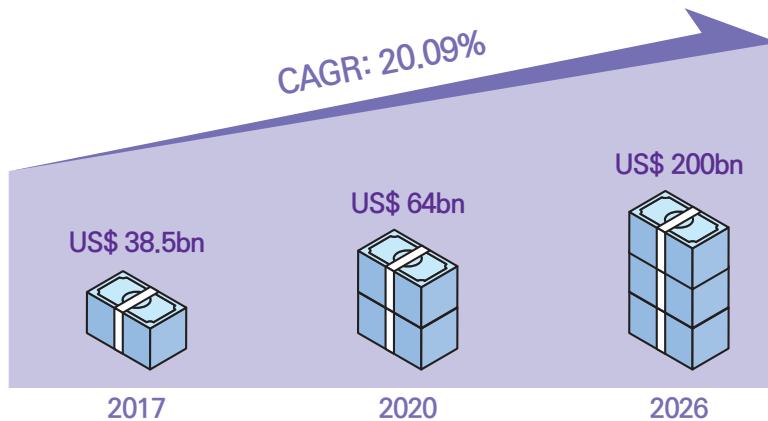
-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부정책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와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ke in India와 마찬가지로 인도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인도 내 사회전반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정부가 2016년에 발표한 지원정책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하여 인도 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여러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부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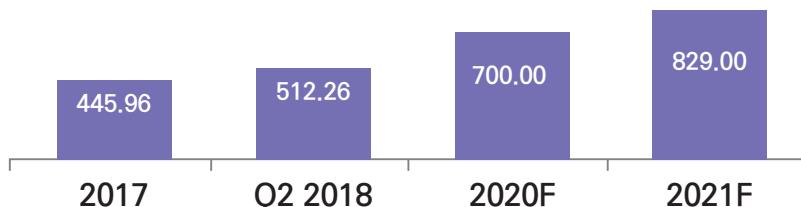
■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

- 인도는 경제성장과 함께 인터넷 사용자 증가, 휴대폰 보급 확대 및 전자결제시스템 발전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자료에 따르면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385억 달러에서 2020년 640억 달러 추후 2026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홈페이지 ('19년 7월 기준) (Last Updated: July, 2019)

- 또한 인터넷 사용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까지 8억 2,9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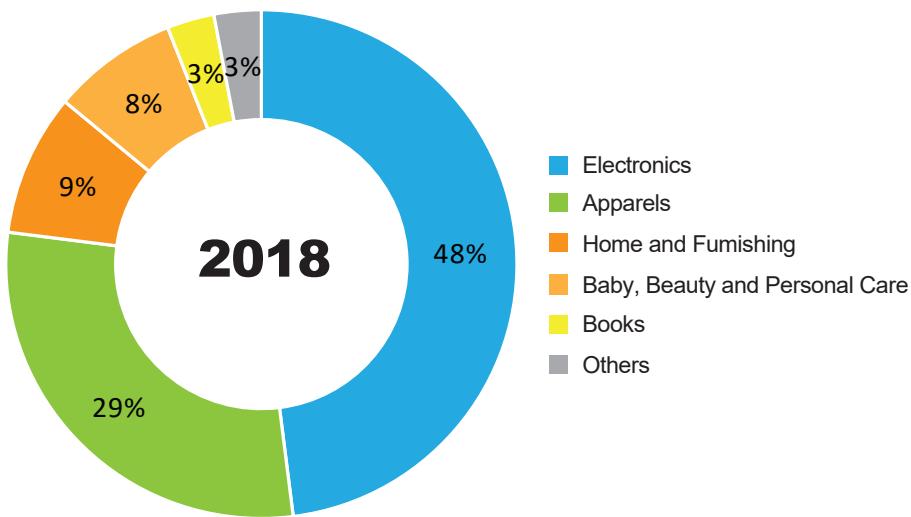
주 : F – 추정치, Q2 2018 – '18년 6월 기준(As of June 2018)

자료 :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홈페이지

■ 인도 전자상거래 주요 유통제품

-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제품은 전자제품(48%)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패션 및 의류관련 제품(29%), 홈퍼니싱(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9%), 유아용품 · 화장품 등(8%), 서적(3%), 기타(3%) 순으로 나타남³⁰⁾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유통되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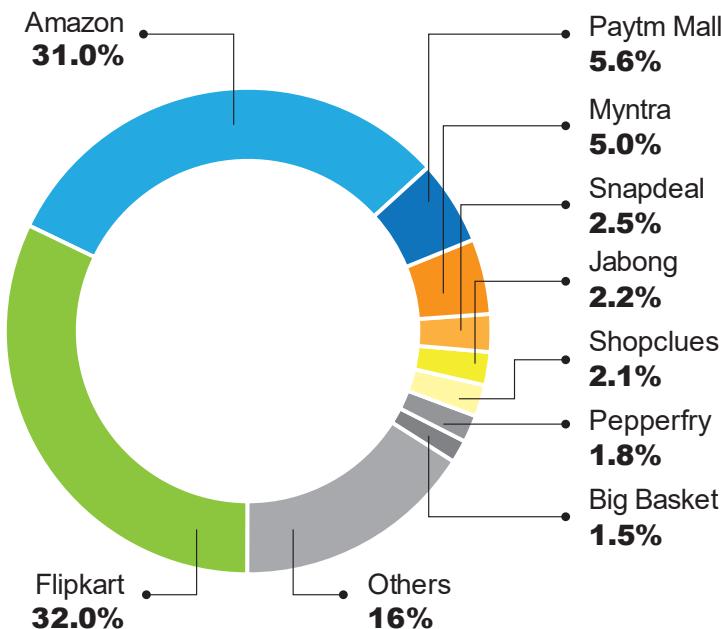


자료 :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홈페이지 ('19년 7월 기준)(Last Updated: Jul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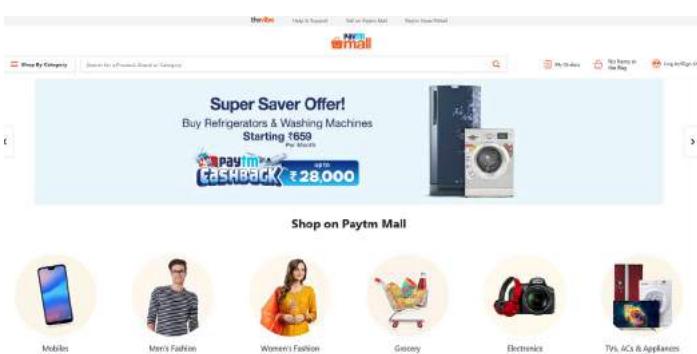
■ 인도 전자상거래 성장을 이끄는 업체들

- 인도의 기업별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플립카트(Flipkart)가 32%, 아마존 31%, Paytm Mall 5.6% 순임
- (플립카트) 2007년 설립된 인도 전자 상거래 기업이었으나 2018년 미국 월마트에 인수됨
- (아마존) 2013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2위 마켓리더로 자리잡고 있음
- (Paytm Mall) 인도의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Paytm가 2016년 개설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임

인도 기업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2018년 6월 기준)



자료 : India Equity Research on Twitter (검색일자: '19.08.02.)

구분	주요 내용
1 1	<p>플립카트 (Flipka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http://www.Flipkart.com 주요 내용 : 2007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업체로 본사는 벵갈루루에 위치 ※ 2018년 월마트가 인수함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http://www.Amazon.in 주요 내용 : 미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2013년에 인도 지사 설립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https://paytmmall.com/ 주요 내용 : 인도의 대표적인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Paytm이 개설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료 : 각 업체별 홈페이지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 인도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주도하면서 '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

- 최근 인도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규제 증가
- 1991년 시장개방 이후, 인도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과 특혜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인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

무역구제조치 구분 및 주요 내용

종류	주요 내용
반덤핑 (Anti-Dumping Mea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자국 내 판매가격 등)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프방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³¹⁾
상계관세 (Countervailing Mea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가격 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³²⁾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조치하는 수입구제조치임 •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덤프·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임³³⁾

02

인도의 무역구제조치

인도의 무역구제 동향



■ 반덤핑 현황

- WTO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반덤핑 조사 누적건수는(1995년~2018년까지) 총 919건임
- 특히 2016년 반덤핑 조사 건수는 역대 최대로 69건을 기록함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반덤핑	합계	4,519	236	229	298	249	194	5,725
	인도	702	38	30	69	49	31	919
	미국	507	19	42	37	55	34	694
	EU ³⁴⁾	454	14	11	14	9	8	510
	브라질	334	35	23	11	7	7	417
	아르헨티나	309	6	6	23	8	16	368
	호주	267	22	10	17	16	12	344
	중국	211	7	11	5	24	16	274
	캐나다	183	13	3	14	14	14	241
	남아프리카공화국 ³⁵⁾	227	2	–	–	–	2	231
	터키	168	12	16	17	8	6	227
	멕시코	115	14	9	6	8	3	155
	한국	121	6	4	4	7	5	147

주 : 반덤핑 조사 건수가 많은 국가를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34)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통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회원국을 하나의 국가로 계산함

3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통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남아프리카관세동맹(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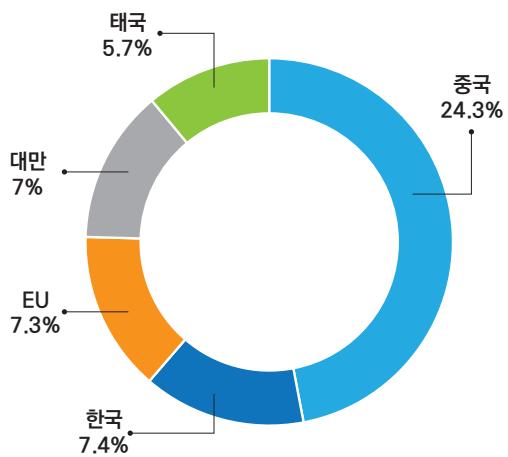
■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 현황

- 인도가 1995년~2018년까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국가는 중국으로 223건(24.3%), 한국 68건(7.4%), EU 67건(7.3%), 대만 64건(7%), 태국 52건(5.7%) 순으로 많았음
- 특히 우리나라는 68건으로 인도의 반덤핑 조사 2위 대상국임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8
1	중국	223
2	한국	68
3	EU	67
4	대만	64
5	태국	52



주 : 반덤핑 조사 건수가 많은 국가를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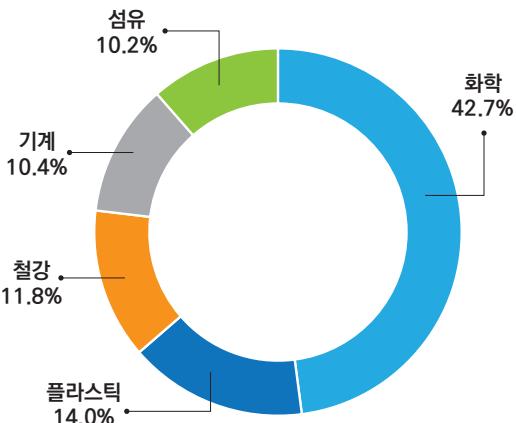
■ 인도의 산업별 반덤핑 현황

- 산업별로 인도가 반덤핑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분야³⁶⁾에 392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플라스틱³⁷⁾ 등 129건, 철강³⁸⁾ 108건 순임

인도의 산업별 반덤핑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8
1	화학	392
2	플라스틱 등	129
3	금속	108
4	기계 ³⁹⁾	96
5	섬유 ⁴⁰⁾	94



주 : 반덤핑 조사가 많은 품목을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36) WTO 정식명칭은 Products of the chemical and allied industries임

37) WTO 정식명칭은 Resins, plastics and articles; rubber and articles임

38) WTO 정식명칭은 Base metals and articles임

39) WTO 정식명칭은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임

40) WTO 정식명칭은 Textiles and articles임

■ 상계관세 현황

- 그간 인도의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반덤핑 조사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2018년 들어 한해에만 10건을 기록하여 급증하는 움직임을 나타냄

전 세계 상계관세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상계관세	합계	335	45	31	34	41	55	541
	인도	1	1	-	1	-	10	13

주 : 인도만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 긴급수입제한조치 현황

-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WTO 출범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조사를 한 국가로 나타났음

전 세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긴급수입 제한조치	합계	272	23	17	11	8	16	347
	인도	32	7	2	1	1	0	43
	인도네시아	23	3	1	0	0	2	29
	터키	17	3	1	0	2	2	25
	칠레	15	0	4	0	0	1	20
	요르단	16	1	0	1	0	0	18

주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건수가 많은 국가를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 산업별로는 화학, 금속, 플라스틱 등 제품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절반 이상이 화학에서 발생함

인도의 산업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8	조사건수
1	화학 ⁴¹⁾	23
2	금속 ⁴²⁾	8
3	플라스틱 ⁴³⁾	3

주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가 많은 품목을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인도의 무역구제 주요 기관⁴⁴⁾



- 인도에서 무역구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다양하지만(재무부 등)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무역구제 조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의 무역구제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으로 포괄적으로 무역구제 업무를 담당함
- 무역구제사무국(DGTR)으로 무역구제 업무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CVD) 관련 업무는 DGAD(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 업무는 DGS(Directorate General of Safeguards), 그리고 수입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 (QR) safeguard) 관련 업무는 DGFT에서 담당하였음
- 무역구제사무국(DGTR)은 반덤핑 방지, 상계관세(CVD)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도 산업 및 수출업자들에게 다른 국가에 의해 제기된 무역구제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자국 내 무역구제 지원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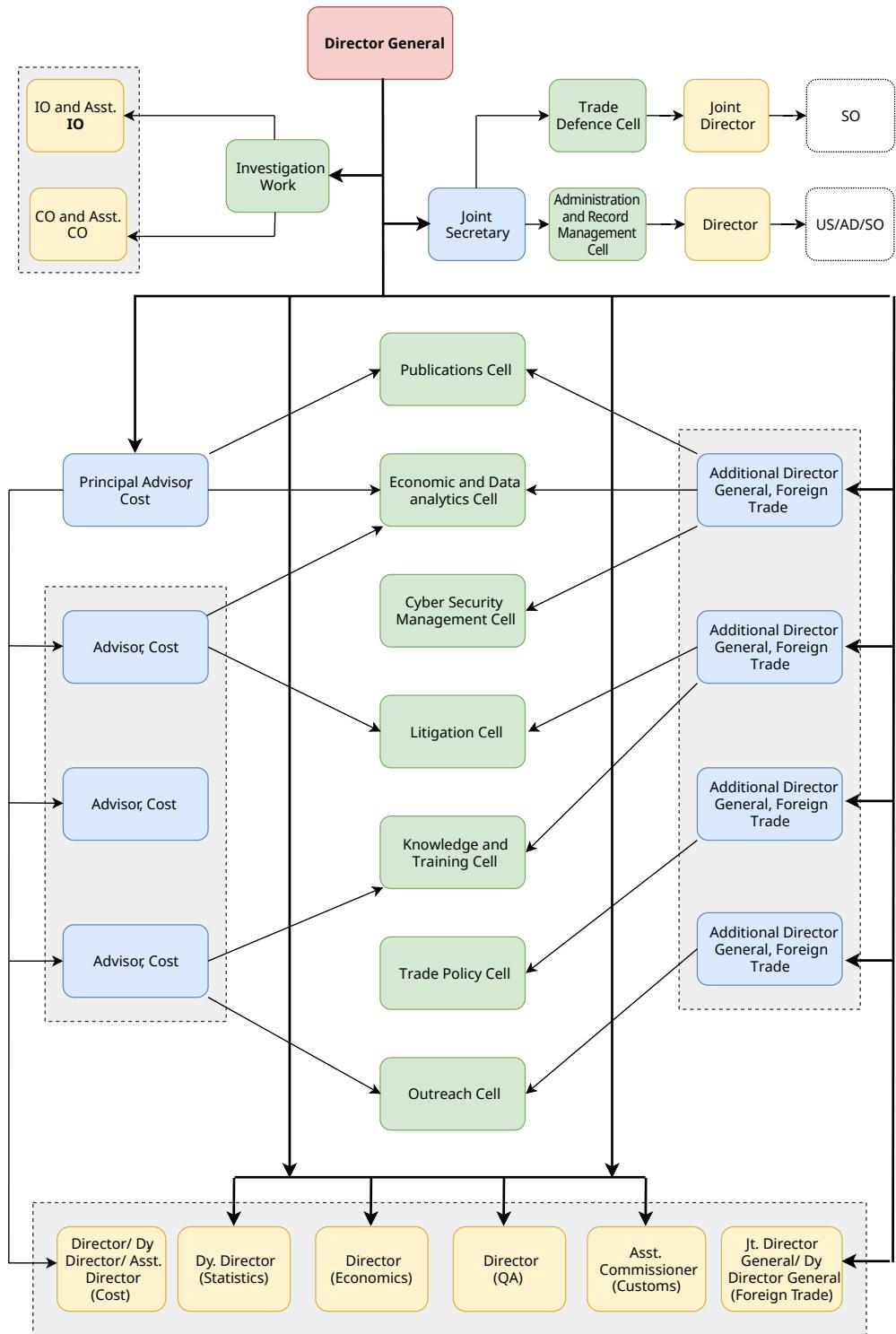
※ 무역구제사무국(DGTR)은 WTO 협정, 관세법 및 규칙 그리고 기타 관련 법 체계에 따른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모든 수출국의 덤플 및 불공정 거래의 관행으로부터 인도 산업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목적을 둠

41) WTO 정식명칭은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임

42) WTO 정식명칭은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임

43) WTO 정식명칭은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임

무역구제사무국(DGTR) 조직도



1. 반덤핑 · 상계관세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사례 조회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dgtr.gov.in/>

2. 확인하고자 하는 무역구제(반덤핑 · 상계관세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선택

- ① 반덤핑 조사(Antidumping Investigations)
- ② 상계관세 조사(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 ③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Safeguard Investigation in India)

3. 좌측상단 ① 반덤핑 조사(Antidumping Investigations)를 선택하면 → A. 현재 조사 진행 중(Anti-Dumping Ongoing Investigation)인 반덤핑 조사 및 B. 조사가 완료된 (Anti-Dumping Concluded Investigation) 반덤핑 사례 조회 가능

1.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India](#)

Ongoing Investigation **A** **Concluded Investigation** **B**

Anti-Dumping Ongoing Investigation

S.No.	Product	Country	Type of Proceeding	Status	Date
1	Dimethylacetamide or DMAc, originating in or exported from China PR & Turkey.	China PR & Turkey.	Others	Ongoing Investigation	02/21/2018
2	Anti-Dumping Investigation concerning imports of Polystyrene of all types except expandable Polystyrene from Iran, Malaysia, Singapore, Chinese Taipei, UAE and USA.	Iran, Malaysia, Singapore, Chinese Taipei, UAE and USA.	Anti-dumping	Ongoing Investigation	07/11/2019
3	Flexible Slatstock Polyol originating in or exported from Australia, EU and Singapore.	Australia, EU & Singapore.	Anti-dumping	Ongoing Investigation	01/11/2015

- 반덤핑 규제 절차 업무는 다음과 같음

단계	주요내용
1 조사 전(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시(업체로 부터), 이를 문서화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자료 수집함
2 조사 실시	업체로부터의 청원 신청을 토대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역구제사무국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다는 공개 통지가 발행
3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 공표	무역구제총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가 개시된 주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함.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60~70일 이내에 완료됨
4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 중앙 정부는 무역구제 사무국의 조사 보고서 권고에 근거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관세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만 유효하고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5 이해 당사자의 구두 증거 수집 및 공청회 개시	이해 당사자(국내 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업자 및 외국 생산자, 수입업자, 외국 정부, 협회 및 상공회 등)는 조사 관련 정보와 개별 의견 개진 기회를 무역구제사무국에 요청 가능하며, 해당 사무국은 반덤핑 규제 전체 절차 중 청문회 참석 허용
6 최종 결과 및 권장사항 공표	당국은 이해 당사자의 최종 의견 제출을 검토한 뒤, 최종 결과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공표함

자료:코트라,인도의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2019

(사례) 인도의 對한 반덤핑 사례(섬유)⁴⁵⁾

- (현황) 인도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3일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확정
 - 동 품목은 스판덱스(Spandex) 혹은 라이크라(Lycra)라는 품명으로 주로 불리며 에어로빅, 수영복, 골프 자켓 등 운동복 소재로 사용됨
- (주요 내용)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품목은 HS 5404.1100 품목으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 대만 · 베트남산에 대해 부과 조치됨
 - 한국산에 대해 kg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으며, 기간은 2017년 5월 3일부터 5년간임
 - 동 품목에 대한 비특혜 일반양허관세는 29.441%이며 한-인도 CEPA에 따라 17.39% 특혜세율이 적용되어 왔음
 - 금번 조치로 FTA 특혜관세에 반덤핑관세가 추가로 부과됨

구분	주 요 내 용
HS코드 (해당국)	5404.1100
품명	스판덱스(Spandex) 혹은 라이크라(Lycra)
피제소국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결과	한국산에 대해 kg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 추가
기간	2017년 5월 3일부터 5년간

03

한-인도 CEPA에서의 무역구제

한-인도 CEPA 반덤핑관세제도



- 한-인도 CEPA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비해 완화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조사신청 정보교환

-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열흘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할 의무 협정문 상에 명시⁴⁶⁾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인도 CEPA
1 조사신청 정보교환	반덤핑조사신청서(제소장)의 접수 사실을 조사개시 이전에 수출국 정부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의무 사항

-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수입국 조사당국이 반덤핑조사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조사개시 이전에 수출국 정부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고 있지 않음⁴⁷⁾

- 최소부과원칙(LDR)의 도입⁴⁸⁾

- 한-인도 CEPA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의무화하고 있음
- 최소부과원칙 : WTO 반덤핑 협정에는 덤핑마진보다 낮은 규모의 반덤핑관세가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하다면, 그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규정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인도 CEPA
2 최소부과원칙 (LDR)	WTO 반덤핑협정 제9.1조는 확정반덤핑관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8.1조는 가격인상약속과 관련하여 최소부과원칙을 권장하고 있음	한-인도 CEPA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의무화

-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규모를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함. 예를 들어 덤핑마진이 8%로 판명된 경우에 수입국은 최대 8%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에 10%를 초과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제로잉 금지⁴⁹⁾

- 제로잉(zeroing)이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규정한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덤픽을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픽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픽 마진을 임의적으로 높이는 관행임



- 즉 계산된 모델별 덤픽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픽 마진을 0으로 처리
→ 전체 덤픽 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⁵⁰⁾가 존재
- 덤픽마진 산정 원칙: 먼저 각 상품별로 덤픽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픽마진을 합산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인도 CEPA
3	제로잉 금지	제로잉이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규정한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와 관련된 사항임	제로잉을 협정문 상에서 금지하기로 규정함

■ 재심 종료 후 동일물품 조사금지

- 한-인도 CEPA에서는 반덤핑 조사 종료 이후 1년 이내 동일 물품 조사금지를 규정⁵¹⁾함
- WTO 반덤핑협정에 없는 조항으로서, 한-인도 CEPA에 신설된 조항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인도 CEPA
4	기타 (동일물품 조사금지)	–	반덤핑 조사 종료 이후 1년 이내 동일 물품 조사 금지를 규정함

한-인도 CEPA 긴급수입제한조치



■ 한-인도 CEPA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기본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한-인도 CEPA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은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특징
- 한-인도 CEPA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한-인도 CEPA (긴급수입제한조치)
1	발동요건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상대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할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⁵²⁾ 할 수 있음
2	사전협의 및 기회제공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상대국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전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해야 한다고 명시 ⁵³⁾
3	1년 이내 조사 완료	어떠한 경우라도, 조사는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⁵⁴⁾
4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중복 적용 배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함 ⁵⁵⁾

■ 특히, 한–인도 CEPA 협정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서는 WTO 체제와 다른 요소들을 포함⁵⁶⁾

구분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한–인도 CEPA
1	발동요건 ⁵⁷⁾	수입증가와 산업피해간 인과 관계의 입증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에 의한 관세인하와 수입증가간 인과관계 입증요구⁵⁸⁾ 수입증가와 산업피해간 인과관계의 입증요구
2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동시적용 배제 ⁵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긴급관세조치가 발동되는 동안에는 한–인도 CEPA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불가
2	사법 행정재판 재심 가능 ⁶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의 재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가능 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은 사법적 재심을 제외하고는 수정될 수 없음
3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제한 ⁶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긴급관세조치 적용시 상대국산 상품을 적용대상에서 배제 가능

58) 원산지 상품이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결정은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가 수입증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진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원인과 동등하거나 그 보다 더 클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의개시 또는 종료와 수입증가 간의 기간 경과가 그 자체로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수입증가가 명백히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와 무관한 경우에는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인도편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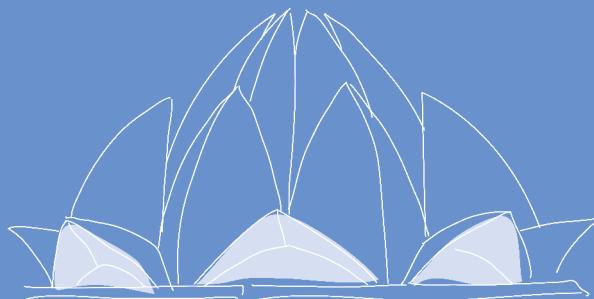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V

우리기업의 한-인도 CPEA관련 수출애로사항

1.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2. 서명권자 불일치 등
3.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애로 사항 사례
4.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상 개정된 HS 요구
5.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C/O 불인정 사례



1.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애로사항



- 인도세관에서 한-인도 CEPA협정 적용을 위해 제출한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통관을 보류

관련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기관발급
 -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대한민국 원산지 물품	인도 원산지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자유무역 지역관리원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2014.5.15 추가 지정)]•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016.3.30 추가 지정)]

■ 인도의 통관 환경

- 인도는 13개의 관할지역별 세관이 하부 세관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명목상 세관행정이 통일되어 있음
- 그러나 관할 세관당국 간에 소통 미비로 인해 실제로는 관세통관상의 애로가 많이 발생
- 즉,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당국별 품목분류 기준 또는 협정세율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며 세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따른 인정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함

■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

- 인도 정부 섬유부의 섬유산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인도 전역에 26개가 넘는 지사를 두고 있음
- 주요 업무 섬유제품에 대한 ① 제3자 인증, ② 수출인증, ③ 기술교육 및 ④ 시험·검사·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수산물수출개발원은 수산물 수출 보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또한 해양 제품의 원료, 고정 표준, 규격, 교육, 검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해외 해산물을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

문제해결



- 인도세관과 수입바이어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최초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음을 통지하여 세관의 통관진행을 완료
- 그러나 사전적 대응으로서 향후 인도수출시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통관을 진행하기로 함

※ 관련법령참조

1. 한-인도 CEPA 제4.2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3. 동 시행규칙 부칙(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8조 4항 1호의 섬유위원회 및 수산물수출개발원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는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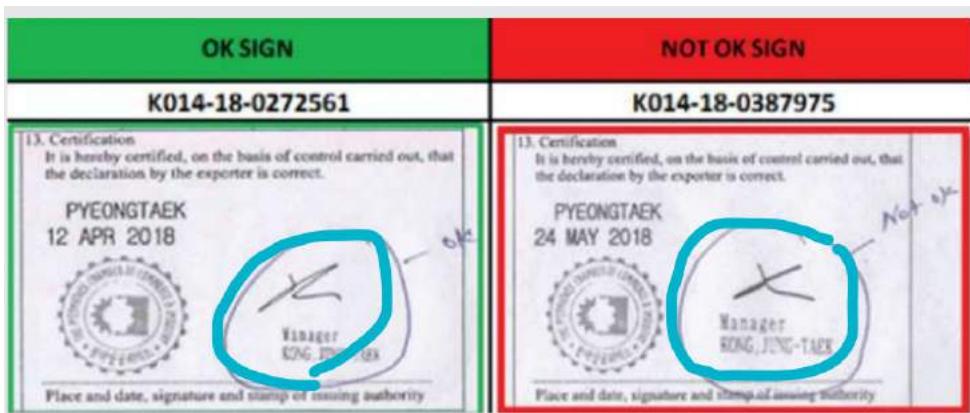
2. 서명권자 불일치 등

애로사항



-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인도세관에 제출
- 그러나 인도세관은 ① 서명권자 미확인, ② 발급담당자 서명의 경미한 오류 및 ③ 서명 불일치 등의 이유로 통관을 불허하거나 보류 혹은 특혜적용을 거부함

미세한 서명 차이로 인한 통관보류 사례(2018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 활동사례집 (2018)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한·인도 CEPA는 기관발급으로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명권자

- 서명권자는 수출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함
-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서명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상대국에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일 것
- 영어로 작성될 것
-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

원산지증명서 세관 발급절차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 발급절차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 원산지증명서의 수정

- 원산지증명서상에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함. 변경은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러한 변경은 서명할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승인 및 증명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의 경미한 불일치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상품이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상 해당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 해서는 안 됨

■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 원산지증명서와 서면신고서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수입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수입 당시국의 관세당국에 정정*된 증명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

* 원산지오류보정제도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나 서식요건에 사소한 오류 또는 허결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제도 (FTA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 세관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 내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문제해결



-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서명권자를 기 서명권자로 확인, 이와 관련한 유효한 증빙 서류 및 협조 서한문을 인도세관에 발송하여 통관이 완료됨

※ 관련법령참조 : 한-인도 CEPA 제4.2조(원산지 발급 기관),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7조(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Issued in _____ (Country) _____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 표시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6. Remarks ✓수급발급의 경우: "ISSUED RETROSPETIVELY" 표시 ✓도난, 분실 또는 멸실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재발급하는 경우: "CERTIFIED TRUE COPY"(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함께 표시)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HS Code 6단위	✓품명(상세하게 표시, 통상적으로 송품장 등 상업서류와 일치하게 기재)	✓물품의 출중량 및 본선인도가격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WO, CC, RVC%, SP 등 실제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송품장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수출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14번란에 "✓" 표시 후 제3국 송품장 발급한 회사 상호, 주소 및 국가명 기재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일부 수정

3.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애로 사항 사례

애로사항



-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후 인도세관에 CEPA 적용을 위해 C/O를 제출
 -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선적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으며, 소급문구(ISSUED RETROSPICIENTLY)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특혜적용 거부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6. Remarks	ISSUED RETROSPETIVELY 미기재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관련법령



- ##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 이후 발급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를 제6란에 기재하여 발급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 i)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시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소급발급될 수 있음
- ii) 의도하지 않은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및 분실된 경우의 진정등본 발급

-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된 경우, 수출자는 제4부본(quadruplicate)*을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진정등본 발급 신청할 수 있음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3부의 부본이 발급됨

발급서류	원본	제2부분	제3부분	제4부분
주요기능	수입자에 제공	발급기관 보유	수입자에 제공	수출자 보유

- 진정등본으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라는 스탬프(세로 0.8cm, 가로 7cm)가 포함
- 발급일자는 최초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됨

※ 관련법령참조

1. 한-인도 CEPA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의 4 및 5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및 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문제 해결



■ 우리 세관은 근무일 7일 이내에 정상발급된 것임을 확인하는 서한문을 인도세관에 보내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음

- 단, 근무일 산정시 대체공휴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충일, 선거일은 제외되므로 주의

4.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상 개정된 HS 요구

애로사항



- 상공회의소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인도세관은 개정된 HS코드(HS 2017)를 요구하며 통관을 보류함
 -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를 2007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나, 인도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의미

- HS코드란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및 통계목적상 마련된 국제공통의 품목분류체계
- 당사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하여 시행하는 HS는 관세율의 근거가 됨

164

■ HS 2017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방법

- 수출신고필증: HS 2017 기준
- FTA 협정별 PSR :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각 협정별 기준에 맞게 HS 코드를 기재 후 신청

협정별 HS 기준

HS 기준	FTA 협정
HS 2007	한-인도 CEPA
HS 2012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HS 2017	기타 협정

자료 :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S 개정 연혁

구분	개정내용	HS 6단위 개수
1차 개정 ('92.01.01)	HS 제정 작업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및 호의 용어를 보완·개정	5,018
2차 개정 ('96.01.01)	신상품의 개발과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	5,113 (HS4단위: 1,241)
3차 개정 ('02.01.01)	폐기물 및 CITES 협약 대상품목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하였으며 HS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용어정의 등을 마련	5,224 (HS4단위: 1,244)
4차 개정 ('07.01.01)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제물질 및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호(또는 소호)를 신설	5,052 (HS4단위: 1,221)
5차 개정 ('12.01.01)	FAO의 요청에 따른 농수산물의 분류체계 강화 및 신상품에 대한 호(또는 소호)를 신설하였으며 불필요한 소호를 통합	5,205 (HS4단위: 1,224)
6차 개정 ('17.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요청에 따른 농수산물 등 분류체계 정비 – 환경·사회적 관심품목 특게(말라리아 퇴치용 물품, 화학무기제조 원료,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소호주 및 소호 신설 – 첨단기술발전 반영(LED 램프 소호 신설, 전자집적회로 범위확대, 전기자동차 소호 신설, 모니터 분류체계 수정 등) –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호(제9620호)신설 	5,387 (HS4단위: 1,222)

자료 : 한-인도 CEPA 협정문 및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문제 해결



- WCO HS 개정본(2007, 2017)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에게 서한문을 요청하여 업체측에 전달
- 인도주재 관세협력관은 주인도 국세관과 함께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여 해결요청 서한문을 전달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여 인도세관으로부터 HS2007 기준 세번의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5.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C/O 불인정 사례

애로사항



- 2017년 이후 가정용 의료기기를 제9018.90호로 수출하였으나 현지 인도세관의 수입 세번이 한국발행 세번과 달라 특혜적용 불가
 - 한국에서 수출하는 세번은 제9018.90호(인도 MFN 7.5%, CEPA rate 0%)이나, 인도 수입 세번은 제9019.10-2000호(인도 MFN 7.5%, CEPA rate 0%)임
- 현재 세계 각국은 물품 관점 및 해석방법의 차이, 기준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국가간 품목분류에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

관련법령



-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대국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 품목번호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식서류는 최초 C/O발행시 제출하고, 이후 동일 물품의 C/O신청시 제출 생략 가능함

■ 원산지 검증시 대응

- 품목분류 상이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코드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되어야 함
- 즉 상대국 HS코드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검증시 불충족 위험이 있음을 유의할 것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 ① 공식서류로 HS코드가 다름이 확인되고 ② 우리나라 HS코드로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 상대국의 HS코드로 추가 인증 처리

문제 해결



- 인도 수입자로부터 수입국 HS코드(세번)를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서)를 받아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달
- 해당 수출자의 인도 수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인도 HS코드(세번)로 C/O 작성토록 상공 회의소에 협조 요청

참 고 문 헌

- 1) KOTRA, 인도 시장현황 및 진출 유망 산업(2019), 내용 일부 요약
- 2)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조 변화(2015), 내용 일부 요약
- 3), 6), 8)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편 (2017) 내용 일부 요약
- 5) KOTRA 뉴델리 무역관, 인도의 관세 및 통관제도와 절차, 유의사항 (2018) 내용 일부 요약
- 7)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インドSVBの概要と関連者からの輸入における留意点 (2019)
- 11) KITA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2016)
- 12) 국제원산지정보원 내부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인도 사전심사제도 현황 및 활용사례 (2019) 내용 요약
- 13)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 14~17) 각 기관별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19)~20) 인도 CDSCO 홈페이지 및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 21), 24)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 사무소, [해외시장동향] 2016 매기라면 사태로 야기된 인도 식품 수입규정 강화 및 한국식품의對인도 수출여건 (2016) 내용 요약
- 23) http://www.ec21.co.kr/issue-info/international-issues/food_issue/?mod=document&uid=680.
- 25) 인도 TEC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인증정보(TEC)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26) 관세청,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 (2017) 내용 요약
- 27)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KOTRA,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2017)
- 28)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Consolidated FDI Policy (Effective from June 07, 2016)
- 29) <https://www.iflr.com/Article/3865145/PRIMER-Indias-new-FDI-e-commerce-rules.html?ArticleId=3865145>
- 30) <https://www.ibef.org/industry/ecommerce/infographic>
- 31) 관세법 제51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32) 관세법 시행령 제72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33) 관세법 제65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44) 무역구제사무국(DGTR) 홈페이지
- 45) KORTA, 인도 재무부,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공고 (2017) 내용 요약
- 46) 한-인도 CEPA 제2.14조
- 47) WTO 반덤핑협정 제5.5조
- 48) 한-인도 CEPA 제2.17조
- 49) 한-인도 CEPA 제2.18조
- 50)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 51) 한-인도 CEPA 제2.19조
- 52), 57) 한-인도 CEPA 제2.22조
- 53) 한-인도 CEPA 제2.23조 다
- 54) 한-인도 CEPA 제2.23조 바
- 55) 한-인도 CEPA 제2.23조 차
- 56) 손기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의 WTO협정과 비교분석 (2016)
- 59) 한-인도 CEPA 제2.23조
- 60) 한-인도 CEPA 제2.26조
- 61) 한-인도 CEPA 제2.27조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인도**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